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2018. 8.

한국벤처투자(주)

목 차

[Part 1 : 공통 사항]

I. 목적 및 적용범위

- 1. 목적 3
- 2. 적용범위 3

II. 자펀드 운용

- 1. 회계감사인 선정 4
- 2. 투자조합 운용보고 5
- 3. 매월 보고 자료 점검(운용사) 9
- 4. 투자금 실사 및 보고 10
- 5. 자펀드 Valuation 실시 및 보고 12
- 6. 자펀드 해산 및 청산 절차 13
- 7. 관리보수 조정 사항 20
- 8. 소액출자펀드에 대한 관리기준 21
- 9. 자펀드 운용인력 변경처리 및 관리보수 삭감기준 22
- 10. 콜옵션이 부여된 조합 자산 배분 26

III. 투자 및 사후관리

- 1. 투자 전(前) 확인사항 27
- 2.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30
- 3. 투자계약 체결 34
- 4. 피투자기업 사후관리 37

[별첨1] 조합 사후관리 주요 체크리스트 40

- 1)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 2) 투자계약 체결
- 3) 피투자기업 사후관리

[별첨2] 회계감사인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43
[별첨3]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44
[별첨4] 투자계약서 투자금 회수 조항 예시	45

[Part 2 : 문화콘텐츠 분야]

I.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적	49
2. 적용범위	49

II. 문화·콘텐츠 자펀드 운용

1. 투자 대상	51
2. 인정·주목적·특수목적투자 비교	53
3. 주요 출자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거래	57
4. 관리보수	60
가. 문화계정	
나. 영화계정	

III. 프로젝트 투자

1. 프로젝트 투자의 정의	61
2. 해외 프로젝트 투자	62
3. 투자의무비율 산정 기준	62
4. 원금보장성 프로젝트 투자	63
5. 표준계약서 사용	64
6. 영화 인센티브 관련 투자기준	64
7. 프로젝트 제작 관련 투자기준	64

IV. 프로젝트 투자 사후관리

1. 투자심의자료	65
2. 투자시 VICS 입력항목	66

3. 별도계좌 개설 · 운영	70
4. 감사보고서 작성	71
5.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72

[Part 3 : 디지털콘텐츠 분야]

I.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적	75
2. 적용범위	75

II. 디지털콘텐츠 자펀드 운용

1. 투자 대상	77
----------------	----

III. 프로젝트 투자

1. 프로젝트 투자의 정의	79
2. 해외 프로젝트 투자	79
3. 투자의무비율 산정 기준	79
4. 표준계약서 사용	79

IV. 프로젝트 투자 사후관리

1. 프로젝트 투자 사후관리	80
-----------------------	----

[Part 4 : FAQ]

문의사항이나 개정요청사항은 다음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차승휘 대리 ☎ 2156-2455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최은주 과장 ☎ 2156-2075

신 · 구조문 대비표

○ 시행일 : 2018. 8. 6.

[Part1 : 공통사항] II. 자펀드 운영

가이드라인 상 목차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2. 투자조합 운용보고	① 투자 진행별 보고 항목 및 내용 - 투자실행 - 中 투자계약서 제출 관련 내용 수정 (비고) 원본 스캔	① 투자 진행별 보고 항목 및 내용 - 투자실행 - 中 투자계약서 제출 관련 내용 수정 (비고) <u>투자계약서 원본 스캔 및 제출 시 VICS를 통해 투자조건 일치 여부 및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 부 확인</u>
	② 시기별 정기보고 항목 및 내용 <u>(신설)</u>	② 시기별 정기보고 항목 및 내용 <u>(구분) 분기별</u> <u>(보고항목) 고용현황</u> <u>(보고 기한) 매분기 말일 + 15일</u> <u>(보고내용) 투자기업의 개인정보가 포함 되지 않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총 고용인원 및 청년(만15~39세)고용인원 현황 자료</u> (첨부문서) <u>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현황</u> (비고) <u>VICS 시스템 활용</u>
6. 자펀드 해산 및 청산 절차	<해산 및 청산절차> 도표 수정 - 잔여자산 가치평가 및 승인 시기 등 변경 (절차) 해산실사 → 해산일 → 회계감사 → 해산총회 → 잔여자산 가치평가 및 승인 → 구주유통망 등록 및 세컨더리 운용 사(전체) 매수의사 확인 → 청산총회 →	<해산 및 청산절차> 도표 수정 - 잔여자산 가치평가 및 승인 시기 등 변경 (절차) <u>구주유통망 등록</u> → 해산실사 → 해산일 → 회계감사 → 해산총회 → <u>임시총회</u> <u>(가치평가 법인 선정) → 잔여자산 가치 평가 → 임시총회 (가치평가 금액승인</u>

가이드라인 상 목차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p>청산</p> <p><해산 및 청산절차> 침조 수정 * 해산 시 잔여자산은 평가가치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요구할 경우 재평가 실시 가능</p> <p>* <u>(신설)</u></p>	<p><u>및 평가금액 이상 잔여자산 GP매입 승인</u> → 청산총회 → 청산</p> <p><해산 및 청산절차> 침조 수정 * <u>(삭제)</u></p> <p>* <u>기준 규약상 청산기한은 90일이 원칙. 단, 추가 청산기간이 필요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청산계획에 반영하고 조합원 총회 특별결의 득할 것</u></p> <p>** <u>조합 만기 180일전에 잔여자산을 구주유통망 의무 등록해야하며, 만기 후 3개월 이상 등록 필요</u></p> <p>*** <u>GP가 잔여자산 인수 시 평가가치 이상으로 매입</u></p>
6. 자펀드 해산 및 청산 절차	<p>① 해산 및 청산 절차</p> <p>- 해산총회 세부내용, 잔여자산 매각, 잔여자산 평가 및 업무집행조합원 인수 내용 변경</p> <p><u>(신설)</u></p> <p><u>(신설)</u></p>	<p>① 해산 및 청산 절차</p> <p>- 해산총회 세부내용, 잔여자산 매각, 잔여자산 평가 및 업무집행조합원 인수 내용 변경</p> <p><u>(날짜) D-365~D-180</u> <u>(내역) 구주유통망 등록</u> <u>(세부내용) 잔여자산 구주유통망 자율 등록</u></p> <p><u>(날짜) D-180~D+90</u> <u>(내역) 구주유통망 등록</u> <u>(세부내용) 잔여자산 구주유통망 의무 등록</u> <u>(비고) 만기일 이후 잔여자산 구주유통망 90일 이상 등록 필요</u></p>

가이드라인 상 목차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p>(날짜) 회계감사 후 즉시 (내역) 해산총회 (세부내용) (전략)</p> <p>·제4호: 잔여자산 평가 법인 선정 ·제5호: 조합 청산계획 승인 (잔여자산 평가 일정, 청산기한 설정, 청산인 선임, 잔여자산 회수방안, 배분계획 등) ·제6호: 해산 결의(D-Day가 해산일) (비고) · 조합회계감사인은 잔여자산 평가 법인으로 선정될 수 없음</p> <p>(날짜) ~D+60 (내역) 잔여자산가치평가 - 이하 생략</p> <p>(날짜) ~D+150 (내역) 매각 진행 - 이하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날짜) 회계감사 후 즉시 (내역) 해산총회 (세부내용) (전략)</p> <p>· <u>(기존 제4호 삭제)</u> · <u>제4호: 조합 청산계획 승인</u> (<u>(삭제)</u>), 청산기한 설정, 청산인 선임, 잔여자산 회수방안, 배분계획 등) · <u>제5호: 해산 결의(D-Day가 해산일)</u> (비고) · <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p><u>(날짜) ~청산총회-60일</u> <u>(내역) 매각 진행</u> <u>(세부내용) 잔여자산 GP 자율처분</u></p> <p><u>(날짜) ~ D+365</u> <u>(내역) 잔여자산 미매각의 경우</u> <u>- 잔여자산 가치평가</u> <u>(세부내용)</u> · <u>청산총회 전 60일 이내 임시총회에서 평가법인 선정 후 평가</u> · <u>가치평가방법은 ‘투자자산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름</u></p> <p><u>(비고) 조합회계감사인은 잔여자산 평가 법인으로 선정될 수 없음</u></p>

가이드라인 상 목차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p>(날짜) ~ D+365 (내역) 잔여자산 업무집행조합원 인수</p> <p>(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신설)</u> · 총회를 통해 잔여자산평가 금액 이상으로 업무집행조합원 인수 (경우에 따라 제3자 인수 가능) <u>(신설)</u> <p>* 가치평가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 시 재평가 실시</p>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신설)</u> <p>- 참조 신설 <u>(신설)</u></p>	<p>(날짜) ~ D+365 (내역) <u>잔여자산 매매각의 경우</u> - <u>잔여자산 업무집행조합원 인수</u></p> <p>(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가치평가 결과를 조합원총회에서 승인</u> · 총회를 통해 잔여자산평가 금액 이상으로 업무집행조합원 인수 또는 제3자가 인수 가능 <u>(단, 가치평가 승인 이후 제3자가 잔여자산 인수 시에는 평가액 이상으로 인수)</u> <p>* <u>(삭제)</u></p>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평가액 승인 이후 즉시 GP매입</u> <p>- 참조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청산기간 1년 부여 가정</u> <u>(단, 기존 규약상 청산기한은 90일이 원칙. 추가 청산기간이 필요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청산계획에 반영하고 조합원 총회 특별결의 득할 것)</u>
6. 자펀드 해산 및 청산 절차	<p><u>(신설)</u></p>	<p><u><잔여자산 평가 시 완전한 정보 제공 의무></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잔여자산 가치평가 진행 시 업무집행조합원은 평가대상 법인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평가법인에 제공할 의무 부담하며, 관련하여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다음 표와 같음</u> <p>- (이하 표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이후 GP는 잔여자산 가치평가 금</u>

가이드라인 상 목차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p><u>액승인 임시총회 시 평가기관에 제공한 주요 정보에 대한 Check list¹⁾를 제출</u></p> <p>· <u>GP의 의무 이행을 충실히 할 목적으로 GP가 잔여자산인수 후 단기간 내 상당규모 이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청산 이후 추가배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청산총회 안건 상정</u></p> <p>- (추가배분 요건) GP인수 후 6개월 내 매각차익이 발생하고 해당 매각 차익이 매각가액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p>
6. 지펀드 해산 및 청산 절차	<p>① 해산 및 청산 절차 中 <u><세컨더리펀드 매수의사 요청 공문 예시></u></p> <p><u>(신설)</u></p> <p>② 벤처캐피탈 구주유통망 활용 中 <구주유통망을 활용한 해산절차></p> <p>보유자산자율등록 → 미처분자산의무등록 → 존속기한 만료일 → 자산평가 → 공매(평가가격) → 미처분자산 GP인수 → 청산</p> <p><존속기한 만료일 이후 VC구주유통망 활용> 도표 수정</p> <p>미처분 자산 평가(회계법인) → 미처분 정보입력(VC구주유통망) → 매각물건</p>	<p>① 해산 및 청산 절차 中 <u><기존 예시 내용 및 표 모두 삭제></u></p> <p>¹⁾<u><주요정보 제공 체크리스트></u> - (이하 양식 생략)</p> <p>② 벤처캐피탈 구주유통망 활용 <구주유통망을 활용한 해산절차></p> <p>보유자산자율등록 → 미처분자산의무등록 → 존속기한 만료일 → <u>공매(공매가격) → 자산평가</u> → 미처분자산 GP인수 → 청산</p> <p>< <u>(삭제)</u> VC구주유통망 활용> 도표 수정</p> <p><u>(삭제)</u> → 미처분 자산 정보입력(VC구주유통망) → 매각물건 공개 → 정보조회</p>

가이드라인 상 목차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공개 → 정보조회 → 매각물건 열람 (평가 및 입찰참여) → 가격협상 → (협상결렬시) 재매각 또는 GP인수	→ 매각물건 열람(평가 및 입찰참여) → 가격협상 → (협상결렬시) 재매각 또는 GP인수 *가치평가 진행 후 해당 가 액 이상으로 인수
9. 자펀드 운 용인력 변경처 리 및 관리보 수 삭감기준	① 기본방향 항목 신설 (신설)	① 기본방향 항목 신설 - <u>운용중인 자펀드(청산중인 자펀드 제외) 운용인력의 수는 선정 당시 의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규모에 따른 인력구성 요 건을 준수</u> · 2018년 출자사업 공고문상 인력 구성 요건표 추가
	② 운용인력 변경시 처리기준 (신설)	② 운용인력 변경시 처리기준 - <u>변경된 운용인력이 투심위원직을 겸임하고 있었던 경우,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운용인력변경과 함께 투심위원도 변경하여야함</u> 을 유의 - 관리보수 삭감을 산출기준 참조 신설 * '주목적 투자액' 이 '투자의무금액' 을 상회하는 경우 '주목적 투자액 =1' 으로 적용
	③ 관리보수의 삭감 항목 신설 (신설)	③ 관리보수의 삭감 항목 신설 - <u>1년 이내 2회 이상 관리보수 삭감 시 산정 기준 : 삭감 조치의 선후 관계없이 규약상 한도 내에서 합 산하여 삭감</u> · (예시) 관리보수 5% 삭감 조치 뒤 해당 연도 이내 다시 5% 삭감시 해당연도 관리보수의 총 10% 삭감 (5% + 5%)
	③ 관리보수의 삭감 - 결성 후 1년이내 변경시 참조 신설 (신설)	③ 관리보수의 삭감 - 결성 후 1년이내 변경시 참조 신설 * 가이드라인 상의 기준이 기준규약 상

가이드라인 상 목차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p>- 변경횟수에 따른 할인율</p> <p><u>(신설)</u></p> <p><u>(신설)</u></p> <p>- 변경횟수에 따른 할인율 참조 신설</p> <p><u>(신설)</u></p>	<p><u>연간 관리보수 삭감 한도와 배치될 경우 기준규약상 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u></p> <p>- 변경횟수에 따른 할인율</p> <p><u>(누적 변경횟수)</u> · 1회 이하 (단, 결직으로 인한 변경) <u>(삭감여부) 0</u> <u>(변경횟수 할인율) 50%</u></p> <p>- 변경횟수에 따른 할인율 참조 신설</p> <p>** 결직으로 인한 운용인력 변경은 누적 변경횟수가 1회 이하여도 관리보수 삭감</p>
10. 콜옵션이 부여된 조합 자산 배분	<u>(신설)</u>	<p>10. 콜옵션이 부여된 조합 자산 배분</p> <p>o <u>유한책임조합원의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지분매수권이 부여된 조합이 조합 원금 배분 시, 동일한 비율로 매칭한 수익을 함께 배분함이 원칙</u></p> <p><u>예) 모태펀드 원금 10억원으로 5억원 수익 발생 ⇒ 원금 5억원(50%) 배분시 수익 2.5억원(50%) 함께 배분</u></p>

[Part1 : 공통사항] III. 투자 및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상 목차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3. 투자계약 체결	(구분) 투자계약서 특별조합원 보고 (주요 내용) ·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특별조합원에게 VICS를 통해 투자계약서 제출 <u>(신설)</u>	(구분) 투자계약서 특별조합원 보고 (주요 내용) ·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특별조합원에게 VICS를 통 해 투자계약서 제출 · <u>투자계약서 제출시 VICS를 통해 투자조건 일치여부 및 의무기재 사항 작성 여부 확인</u>							
	<u>(신설)</u>	(구분) 투자계약서 투자금 회수조항 (주요 내용) · <u>투자계약 체결시 투자금회수 조항 명시</u>							
	<u>(신설)</u>	⁵⁾ <u>투자계약서 투자금 회수조항 (2018.6.28. 이후 결성조합)</u> · <u>[별첨4. 투자계약서 투자금 회 수조항 예시]를 참고하여 반영.</u> · <u>모태펀드 자펀드에서 투자한 투 자기업(또는 그 임직원)이 타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횡 령·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투자금 회수 근거</u>							
4. 피투자기업 사후관리	【 별첨 1 】 조합 사후관리 주요 체크리스트 (예시) 2) 투자계약 체결	【 별첨 1 】 조합 사후관리 주요 체크리스트 (예시) 2) 투자계약 체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체크사항 <전략></th> </tr> </thead> <tbody> <tr> <td>투자계 약서 특별조 합원 보고</td> <td>·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특별조합원에게 VICS를 통해 투 자기약서를 제출하였는가? · (신설)</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체크사항 <전략>	투자계 약서 특별조 합원 보고	·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특별조합원에게 VICS를 통해 투 자기약서를 제출하였는가? ·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체크사항 <전략></th> </tr> </thead> <tbody> <tr> <td>투자계 약서 특별조 합원 보고</td> <td>·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조합원에게 VICS를 통해 투자 계약서를 제출하였는가? · <u>투자계약서 제출시 VICS를 통해</u></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체크사항 <전략>	투자계 약서 특별조 합원 보고
구분	주요 체크사항 <전략>								
투자계 약서 특별조 합원 보고	·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특별조합원에게 VICS를 통해 투 자기약서를 제출하였는가? · (신설)								
구분	주요 체크사항 <전략>								
투자계 약서 특별조 합원 보고	·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조합원에게 VICS를 통해 투자 계약서를 제출하였는가? · <u>투자계약서 제출시 VICS를 통해</u>								

가이드라인 상 목차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p><후략></p> <p><후략></p>	<p>투자조건 일치여부 및 의무기재 사항 작성 여부를 확인하였는가?</p> <p><후략></p> <p><후략></p>
	<p><u>(신설)</u></p>	<p>0 기타 추가 보고사항</p> <p>(1) <u>피투자기업의 고용인원에 대해 VICS를 통해 입력하고, 투자기업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첨부하여 보고 필요</u></p> <p>- <u>보고시기 : 매 분기 말로부터 15영업일 이내</u></p> <p>(2) <u>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 시스템(SIMS) 정보활용 동의서 징구[별첨3]</u></p> <p>- <u>피투자기업에 대해 투자 진행시, 한국모태펀드의 SIMS 보고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및 전산시스템(VICS) 업로드</u></p> <p>- <u>동 정보활용 동의서는 이미 SIMS에 취합된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서로, 해당 동의서를 근거로 한국모태펀드가 피투자기업에게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음</u></p> <p>- <u>참고 : SIMS 운영 근거 (근거표 생략)</u></p>

가이드라인 상 목차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별첨 3]	<u>(신설)</u>	<u>[별첨3] SIMS정보 활용 동의서</u> (양식 생략)
[별첨 4]	<u>(신설)</u>	<u>[별첨4] 투자계약서 투자금 회수조항</u> <u>예시</u> (양식 생략)

[Part2 : 문화콘텐츠 분야] III. 프로젝트 투자

가이드라인 상 목차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3. 표준계약서 사용	- 프로젝트 투자시,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공기관 포함)가 수립한 표준계약서(방송영상(방송영상 제 작, 방송출연, 방송영상제작스태 프, (추가)), 영화(근로, 시나리오, 투자), 공연예술 관련)적용	- 프로젝트 투자시,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공기관 포함)가 수립한 표준계약서(방송영상(방송영상 제 작, 방송출연, 방송영상제작스태 프, 방송작가집필), 영화(근로, 시 나리오, 투자), 공연예술 등)적용

[Part2 : 문화콘텐츠 분야] IV. 프로젝트 투자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상 목차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2. 투자시 VICS 입력 항목	③ 프로젝트 투자시 산업별 분류 - (이하 생략)	③ 프로젝트 투자시 산업별 분류 - 벤처캐피탈협회 프로젝트 유형 분류 준용(VICS 월보고 등록 메 뉴 확인) (기존 내용 및 표 모두 삭제)
4. 감사보고서 작성	4. 감사보고서 작성 <전략> - (형태) 감사보고서를 검토보고 서로 대체 가능하나 회계법인 의 확인이 필요함(현재 규약상 에서는 감사보고서만 가능하지 만 검토보고서가 가능하도록 규약 변경 예정) <후략>	4. 감사보고서 작성 <전략> - (형태) 1. 회계법인이 발행한 보고서 2.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투 자금의 사용 내역 및 투자금의 적정사용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집 행조합원의 확인서(증빙자료 첩 부)로 대체 가능 <후략>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공통 사항)

I.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적

-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업무집행조합원이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이하 '자펀드')를 결성 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발간

2. 적용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 및 그 밖의 한국벤처투자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짐
- 본 내용은 한국벤처투자의 권고사항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는 아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 관리를 위한 세부 적용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임. 가급적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조하여 업무 처리할 것을 권고함
-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은 향후에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며, 만약 본 가이드라인이 업무집행조합원 자체 업무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한국벤처투자 담당 심사역과 협의를 통해 본 가이드라인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음
- 본 가이드라인에 사례로 제시되는 부분은 당사에서 임의로 재편집한 내용으로 참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업무에 인용할 때는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프로젝트 투자

- 프로젝트 투자(지식재산권 투자 제외)는 본 가이드라인의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문화콘텐츠 분야)”의 관련 내용을 준용. 다만, 한국벤처투자 해석에 따라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II. 자펀드 운용

1. 회계감사인 선정

- o 업무집행조합원은 아래 방법으로 자펀드의 회계감사인을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변경할 수 있음

* 기존에 운영되었던 ‘자펀드 회계감사인 Pool’ 제도는 폐지됨(‘15.1.1. 시행)

① 자펀드 회계감사인 선정

- 업무집행조합원은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회계감사인 자격요건 체크리스트’(첨부2 양식) 작성 및 보관
: 대표전담인력의 책임하에 회계감사, 투자금 사용처 실사 등 진행

< 자펀드 회계법인 자격요건 >

- 1) 금융감독원 제출 최근 회계법인사업보고서 기준 공인회계사 수 20인 이상
- 2)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30억 원 이상
- 3)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조합*에 대한 감사 유경험자 우대(담당회계사)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벤처·중소기업 PEF, CRC

※ 담당 회계사 참여제한

- 감액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업무 부실, 모태펀드 업무관련 비협조 및 중대한 비위 사실 확인시 2년간 모태펀드 자조합 회계감사인 참여제한(매년 말 홈페이지 공지)

② 회계감사보수 산정방법

- 아래 기준을 고려 업무집행조합원과 회계법인이 협의
- 단, 최대 회계감사보수를 초과할 경우 조합원들에게 보고 필요

연도말 납입액 기준	최대 회계감사보수 (VAT 별도)
100억원 이하	250만원
100억원 초과 50억원당	70만원

③ 투자금 사용처 실사

비용 기준	비고
건당 100만원(VAT 별도) *단, 출장비, 인쇄비 별도 협의 가능	복수의 조합에서 공동투자 한 기업의 경우 공동으로 실사 진행 및 비용 부담 가능 * 단, 실사보고서에 조합별 투자 금액에 대한 실사 내용 구분 표기 필요

2. 투자조합 운용보고

o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 진행단계 및 기한 내에 아래 사항을 VICS 시스템을 통해 전자보고 진행함

① 투자 진행별 보고 항목 및 내용

구분	보고 항목	보고 기한	보고 내용	첨부문서	비고
투자 심의 위원회 (투심위)	개최 계획 통보	개최일 5영업일 전	개최일자/시간/ 투자심사 내용	심사보고서/ 준법사항 체크리스트/	준법사항체크리스트는 반드시 서명 날인
	결과 보고	투심위 심의종료 후 2영업일 이내 (투자금 집행 전)	투심위 결과	의사록	서명날인 필요
투자 실행	투자집행 사전보고	자금집행일 1영업일전	투자집행 사전 예고		전화 및 이메일 통보
	투자 약정 사항	자금집행일 ~ 다음달 7일	발굴자&심사자 기여율		입력된 기여율 변경불가
	심사역 투자이력관리	자금집행일 ~ 다음달 7일 /변동 발생 즉시	사후관리자 기여율		변경시 KVIC과 사전협의 필요
	투자계약서 제출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투심위 의결내용 반영	투자계약서	원본 스캔 *투자계약서 제출시 VICS를 통해 투자조건 일치여부 및 의무기재 사항 작성 여부 확인
	실물인도 (수탁은행에 제출)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15영업일(국내투자) 혹은 1개월(국외투자) 이내	실물주권을 수탁 은행에 제출		*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의 경우 주식미발행확인서를 기준증서로 대체 가능
출자금	출자에정 사전보고	추가출자일 1영업일전	추가출자 사전 예고		전화 및 이메일 통보
	출자	사유발생일+ 2영업일	입출금일&등록일(신고일)		실제 입금일과 등록일 차이유의
	배분		원금&수익&원천징수 구분		
	모태펀드 출자금 납입계획	월 별 보고	예정 일자 및 예정 금액		준속기간 내 모든 조합 대상
투자 의무 비율 달성 점검	투자의무비율 달성 계획	투자기간 종료 6개월 전	투자의무비율 미달성 사유 및 달성 계획		투자의무비율 미달성 조합에 한해 시행 (공문으로 발송)
	투자기간 종료 후 의무투자 집행 여부	투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의무투자 신규집행 가능여부 및 향후계획		

구분	보고 항목	보고 기한	보고 내용	첨부문서	비고
조합원 총회	개최통보	규약에 정해진 통보기간 이 내(10영업일 전)	총회 의안	총회공문/의안 의결서 참석장 기간단축 동의 서(필요시)	공문은 <u>원본 스캔</u>
	총회결과보고	총회 종료후 2영업일 이내	총회 결과	총회의사록	<u>서명날인된 원본파일</u>
투자 보고회	개최통보	규약에 정해진 통보기간 내	개최공문	개최공문	공문은 <u>원본 스캔</u>

② 시기별 정기보고 항목 및 내용

구분	보고 항목	보고 기한	보고내용	첨부문서	비고
월별	월별 전자보고	매월말일+7일	투자/회수 실적 (투자조건, 회수유 형 등) 월별 재무제표 금융상품, 유가증 권 등		<u>기보고내용 수 정시 KVIC과 사 전협의 필요</u>
	모태펀드 출자금 납입계획	매월말일+7일	예정 일자 및 예정 금액		
	배분계획	매월말일+7일	월별 예정 금액		
분기별	고용현황	매분기 말일 + 15일	투자기업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대 보험 사 업장 가입자 명부, 총 고용인원 및 청년(만15~39세)고 용인원 현황 자료	1)4대보험 사 업장 가입자 명부 2)고용현황	<u>VICS시스템 활용</u>
반기별	온기/반기 투자 보고	2Q : 반기종료일+2개월 4Q : 결산종료일+3개월	영업보고/ 재무제표 보고	영업보고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전 일정 협의
	자 펀 드 Valuation (반기별)	2Q, 4Q : 투자보고회 개최와 연동	자펀드 평가		<u>VICS시스템 활용</u>
투자 후 1년이내	투자자금 실 사보고	최초투자 후 1년 되는 시점에 1회만 보고	공동 양식 참조		

* 특이사항은 수시보고를 활용, 즉각 보고(보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③ 수시보고 항목 및 내용

대항목명	중항목명	수시보고 소항목명
운용사관련	경영진	운용사 대주주 또는 경영진 변동 (대표이사 변경 등)
		경영진, 대주주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 및 피소
	운용사	회사명, 소재지 변경
		펀드 준법감시인 변경
		운용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 및 피소
		본건 펀드 관련 규약, 법규 위반 사항 발생
		재무상황변경(증자, 감자, 부도, 파산, 회사정리, 개시절차 등)
신규펀드 및 추가조합 설립		
기타	기타 운용사 주요사항 (창투사 자진반납 등)	
조합운용관련	운용인력	대표펀드매니저, 핵심운용인력, 일반매니저 변경 예정
		대표펀드매니저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 및 피소
		대표펀드매니저, 핵심운용인력 타조합 참여 또는 검직사유 발생
	조합원	조합원변경(양수도/지분변경)
		출자자 변동 및 변동예정사항 발생
		출자금 지정납입일 위반, 불응 발생
		관리보수 환입 이슈 발생
기타	기타 조합 관련 주요사항	
투자기업관련	법적분쟁	조합 또는 제3자와의 법적분쟁(법률검토포함)
	계약	투자조건 변경
		투자계약위반 (투자금 사용용도 변경)
	기업일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추진, 결과 등)
		상장,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 등
		재무상황변경(감자, 감액, 부도, 파산 등)
		법정관리 및 파산신청
기타	기타 펀드운용 중대 영향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기타	기타	상기 사항 이외 펀드 규약 등에 보고사항으로 명시된 사항 발생

* 수시보고 사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사전적으로 보고요망(보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④ 기타 입력 항목 및 내용

- 투자기업의 주요 정보 입력
- GP 및 LP 등 결성된 조합과 관련된 주요 정보 입력

보고 항목		보고내용	보고시점
투자기업 정보	기업개요	· 업체명/법인번호/사업자번호/대표이사명/업종/주요제품/설립일/벤처기업확인번호/주소/휴폐업일/부도일/상장일/상장시장명/종업원수 등	· 최초 투자시 · 변동 발생시
	주주명부	· 5% 이상 의미 있는 개인 주주 및 모든 기관투자자 · 총발행주수/액면가/기준일자	· 최초 투자시 · 변동 발생시 · 회계연도말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 최초 투자시 · 회계연도말 · 반기말
	프로젝트투자	· 프로젝트명/프로젝트유형/제작사/배급사/순제작비/마케팅비/총제작비/감독/주연배우/크랭크업날짜/크랭크인날짜/개봉일자/상영종료일자/총관객수/BEP관객수/시놉시스 등	· 최초 투자시 · 변동 발생시 · 1차 정산시
GP/조합 정보	운용사 정보	· 회사명, 대표이사,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설립일, 주소, 대표전화번호	· 조합 등록시 · 변동 발생시
	인사정보	· 대표펀드매니저, 투자담당심사역, 관리담당심사역(연락처 포함)	· 조합 등록시 · 변동 발생시

⑤ LLC형 투자조합의 준법모니터링

- LLC형 투자조합(마이크로 VC펀드 포함)의 준법모니터링은 외부(회계법인, 법무법인)에 위탁 할 수 있음. 이 경우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함
- 준법 모니터링을 내부에서 직접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전문적인 준법감시인 채용을 권고함

3. 매월 보고 자료 점검(운용사)

o 한국모태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 보고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7일 이후 자펀드의 수탁은행에서 접수된 조합자산목록과 업무집행조합원의 보고를 대조하고 있음. 업무집행조합원은 보고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 확인 필요

- ① 매월 초(7일 이전) 수탁은행으로부터 직전월말 기준 조합재산현황 보고서(VICS 활용 가능)를 접수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재산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
- ② 수탁은행과 조합재산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수탁은행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입력자료 수정
- ③ 수탁은행과 일치된 조합재산현황 자료를 매월 7일까지 VICS 통해 한국모태펀드에 전송

※ 피투자기업 사업자등록번호에 유의

4. 투자금 실사 및 보고

구분	주요 내용		
투자금 사용용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심보고서에 기재된 투자금 사용용도를 투자계약서에 기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투자계약서 필수 기재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 사용처 -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 - 대상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시 처리방안 <p>* 대상거래 :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p> </td> </tr> </tbody> </table>	투자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 사용처 -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 - 대상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시 처리방안 <p>* 대상거래 :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p>
투자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 사용처 -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 - 대상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시 처리방안 <p>* 대상거래 :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p>			
투자금 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가 집행된 후 1년 이내* · *규약에 투자금 실사 기한이 1년 이내가 아닌 경우에도 1년 이내로 실사 기한 적용 · 투자금 실사보고서를 VICS를 통해 한국모태펀드에 제출 · 실사 결과를 영업보고서 등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보고 		
투자금 실사 결과 문제점 발생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발견시 투자금액 회수 등의 조치방안을 한국모태펀드에 보고 		

<투자금 실사관련 투자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예시>

(예시1) 투자금 사용목적

피투자기업은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음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당초 체결한 투자계약서의 투자금 사용목적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2. -----

주) 사용목적 예시 : 적외선 필터 양산을 위한 클린룸 설치/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해외법인 설립 등 해외시장 진출비용 등

(예시2) 투자금 사용목적 위반 및 대상거래 발생시 제재방안

피투자기업이 투자금 사용목적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투자자는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피투자기업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액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로부터 본 계약해지일까지는 투자금액의 연 0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투자금액의 연 0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예시3) 투자금액 사용처 실사

피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요청으로 투자자가 지명하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투자금 납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금액 사용처 실사를 받아야 한다.

(예시4) 대상거래 인지방안

피투자기업은 제3자에게 자금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시행일로부터 00일 이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매월 (분기별) 투자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투자금 실사 보고서 서식 예시>

<표지>

**투자조합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자금 실사보고서
 ****년 *월 *일

실사자: **회계법인
 보고자: 업무집행조합원 **창업투자

<내용>

I. 일반사항

투자자	업무집행조합원	**창업투자(주)
	투자조합명	*****투자조합
	투자일자	20**년 **월 **일
	투자금액	***원
	투자방식	상환우선주(*,***주)
피투자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II. 투자금 사용목적

투심위보고서	투자계약서	비고
1. ***	1. ***	
2. ***	2. ***	

III. 투자금의 집행내역

1. ***(투자금 사용용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단위: 원)

구분 비목	계획 (A)	사용금액 (B)	잔액 (C)	집행비율(%) (B/A)×100
1. ****				
- ***				%
2. ****				
- ***				

주) 필요 시 세부 집행 내역 기술

IV. 대상거래 발생여부

* 투자금을 제3자에게 자금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기재

V. 종합의견

회계법인별 내부 표현 방식에 따라 실사의 대상, 실사의 한계, 실사 종합의견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을 간략히 기재함.

5. 자펀드 Valuation 실시 및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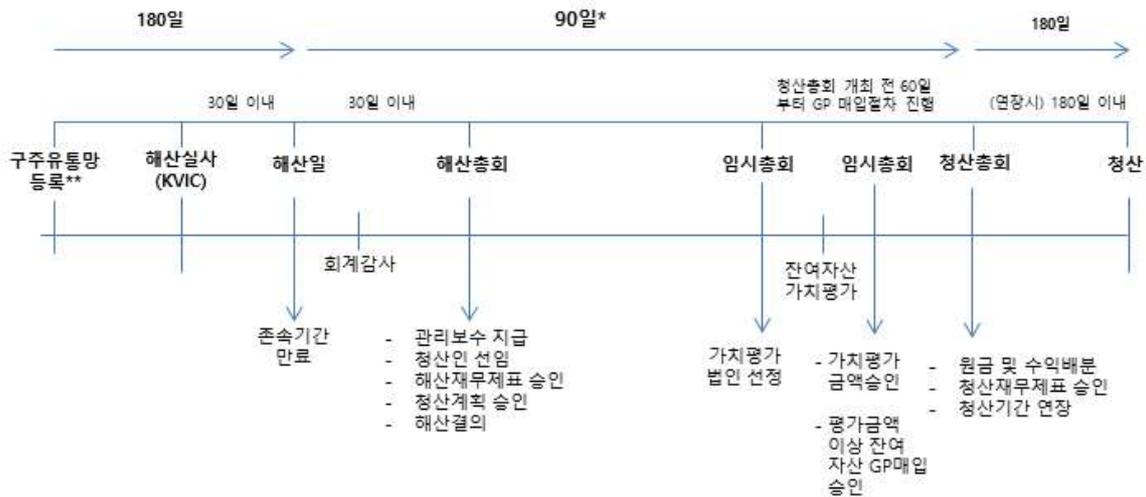
- o 업무집행조합원은 VICS 시스템에 아래와 같이 한국모태펀드에 투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고하여야 함 (대상 : 운용 및 청산 중 조합)

구 분	주요 내용
‘VICS’ 설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install.k-vic.co.kr 접속, 로그인 후 프로그램 자동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CS의 관리자ID 보유 시 VICS 사용자추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음 - 문의사항 연락처 : KVIC 데이터센터 (02-2156-2479)
Valuation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VICS → 자조합가치평가[1404]</u> 에서 가치평가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업의 Valuation 기준일자 재무제표를 VICS에 입력한 후 Valuation 실시 - 자세한 방법은 ‘KVIC 자펀드 가치평가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및 ‘투자자산 평가 가이드라인’ 참조 * 홈페이지(www.k-vic.co.kr) > 알림마당 > 기타공지에서 다운로드 - <u>매년 3월말(전년도 12월말 기준), 8월말(당해년도 6월말 기준) 까지 보고</u>
Valuation 실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 평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주식 평가시 제3자거래가, 유사기업평가, 기타 합리적인 평가방법, Milestone 순으로 적용(가치평가 Hierarchy 준수) - 옵션이 있는 경우 옵션가치 별도 평가 - “적용결산”이 평가기준월과 일치하는지 확인 - 시장가 평가를 제외한 방법들은 한 업체에 복수 평가방법 적용 가능 - 해외 투자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환율로 환산하여 평가 · 프로젝트투자 평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프로젝트투자는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특히, 영화의 경우 1차 정산금액 또는 흥행실적 등을 반영하여 회수가능가액 추정)</u>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투자진행 중 (결과 예측이 불가할 경우) 또는 프로젝트 진척이 미흡할 경우 : Milestone방법 적용 b) 실제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 DCF방법 적용

6. 자펀드 해산 및 청산 절차

- 자펀드 계약상 해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여 조합원간에 주요 일정 사전 협의 등 원활히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함

< 해산 및 청산절차 >



- * 기준 계약상 청산기한은 90일이 원칙. 단, 추가 청산기간이 필요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청산계획에 반영하고 조합원 총회 특별결의 득할 것
- ** 조합 만기 180일전에 잔여자산을 구주유통망 의무 등록해야하며, 만기 후 3개월 이상 등록 필요
- *** GP가 잔여자산 인수 시 평가가치 이상으로 매입

① 해산 및 청산 절차

- 해산 예정일(존속기간 만료일)을 D-Day로 하여 다음 일정으로 진행

날짜	내역	세부내용	비고
D-365 ~ D-180	구주유통망 등록	· 잔여자산 구주유통망 자율 등록	
D-180 ~ D+90	구주유통망 등록	· 잔여자산 구주유통망 의무 등록	· 만기일 이후 잔여자산 구주유통망 90일 이상 등록 필요
~ D-30	해산계획 수립 및 협의	· 잔여 유가증권 처리방법 · 청산기간 중 자산배분방법, 해산실사 일정 협의	
D-30 ~ D-Day	해산실사	· 특별조합원 주도로 실시 (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포트폴리오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1~3일에	· 조합비용 등 조합규약 준수여부 · 투자 및 회수

날짜	내역	세부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걸쳐 실시 ·청산기간 협의 	적정성 평가	
D-Day ~ D+30	회계감사	·해산일을 마지막 회계연도 결산일로 하여 외부감사 진행	· 해산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회계감사 후 즉시	해산총회	<p>(의안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호 : 관리보수 지급 ·제2호 : 원금 및 수익금 배분(필요시) ·제3호 : 재무제표 승인 ·제4호 : 조합 청산계획 승인 (청산기한 설정, 청산인 선임, 잔여자산 회수방안, 배분계획 등) ·제5호 : 해산 결의(D-Day가 해산일) 		
해산일 ~ 청산총회-60일	매각진행	· 잔여자산 GP 자율처분		
~ D+365	잔여자산 매각의 경우	잔여자산 가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총회 전 60일 이내 임시총회에서 평가법인 선정 후 평가 · 가치평가방법은 '투자자산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름 	· 조합회계감사인은 잔여자산 평가법인으로 선정될 수 없음
		잔여자산 업무집행조합원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평가 결과를 조합원총회에서 승인 · 총회를 통해 잔여자산평가 금액 이상으로 업무집행조합원 인수 (단, 가치평가 승인 이후 제3자가 잔여자산 인수 시에는 평가액 이상으로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집행조합원이 인수 시 총회 동의 필요 (규정 제6조 제5항 참고) · 평가액 승인 이후 즉시 GP 매입
	최종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상 우선손실총당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배분액 계산 · 성과보수 계산은 조합규약 뒤에 첨부된 '성과보수 산정예시' 등에 따라 산정 · 총회를 거쳐 최종 배분 승인 	· 현금 배분이 원칙	
	청산 회계감사	· 잔여 자산이 없으므로 재무상태표상 모든 계정값은 "0"	· 감사 날짜기준은 최종배분일	

날짜	내역	세부내용	비고
	청산총회	(의안예시) · 제1호 : 청산 재무제표 승인 · 제2호 : 청산 결의	· 반드시 청산기한 내 실시하며, 불가능한 경우 기간연장 총회 필요
총회 직후	조합청산보고 및 고유번호증 말소	- 감독기관 및 관할 세무서	

- * 청산기간 1년 부여 가정 (단, 기존 규약상 청산기한은 90일이 원칙. 추가 청산기간이 필요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청산계획에 반영하고 조합원 총회 특별결의 득할 것)
- ** 잔여자산 업무집행조합원 인수, 최종배분, 청산회계감사, 청산총회는 동시에 진행 가능
- *** 1년 이내에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 청산기간 180일 추가 부여

< 잔여자산 평가 시 완전한 정보제공 의무 >

- 잔여자산 가치평가 진행 시 업무집행조합원은 평가대상 법인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평가법인에 제공할 의무 부담하며, 관련하여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다음 표와 같음

구분	내용
기업일반	상장 또는 M&A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예정된 경우(예: 주관사 계약을 맺은 경우 등) 구체적 조건 및 향후 일정 등
	계류 중이거나 예정인 중대한 소송사건(법률검토 포함)
	채무불이행, 부도,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등 경영에 중대한 불확실성 발생 사항
사업환경 및 실적	사업 관련 기술적인 환경, 시장 환경, 제도적 환경 및 규제 환경에 있어 유의적인 변화
	대규모 계약 체결 또는 체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관련 계약서 또는 양해각서 등
	사업에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 (예 : 신규시설 투자· 시설증설 결정, 채무면제, 신물질·신기술에 관한 특허권 또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양수도 중요한 임상시험 단계 개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과금체계 결정·변경 등)
지분 변동 관련	투자 이후 증자· 감자로 인한 지분변동 및 주요주주 변동사항
	CB, BW, Stock Option, RCPS 등 지분희석 가능성이 있는 증권 발행내역 및 발행조건
평가 주요 정보	상장 여부(특히 코넥스 상장기업의 경우 활성시장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기준일 전 3개월 간 일평균 거래금액 및 거래 주수 제공)
	평가일 기준 6개월 내 제3자 거래가격* 및 이와 관련 특수관계인 또는 피투자기업 이해관계인의 개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보드 공시가격 및 장외시장 거래가격 포함 - 과거 Valuation 추세 및 적용평가방법 - Valuation 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 평가방법 변경 적용시 해당 사유
	<p>상환권을 보유한 증권 또는 채권의 경우 상환권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필요자료 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기초로 평가법인은 상환권 행사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후 상환권의 가치가 고려된 평가가치를 산출하여야 함. 또한, 상환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투자계약 조건 위반사항 기타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 이후 GP는 잔여자산 가치평가 금액승인 임시총회 시 평가기관에 제공한 주요 정보에 대한 Check list¹⁾를 제출
- GP의 의무 이행을 충실히 할 목적으로 GP가 잔여자산인수 후 단기간 내 상당규모 이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청산 이후 추가배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청산총회 안건 상정
 - (추가배분 요건) GP인수 후 6개월 내 매각차익이 발생하고, 해당 매각 차익이 매각가액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처분 유가증권 평가시 오류 발생 유의사례>

- (사례 1) 업무집행조합원이 미처분 유가증권 인수 후 3~8개월 내에 환매 등의 방식으로 시세차익 발생
- (사례 2) 수익가치 산정시 차기연도 손익을 적자로 추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평가금액 산정/ 실제 차기연도 손익이 약 10억 정도 흑자 발생
- (사례 3) 동일기업에 2개 이상 자펀드에서 투자를 하였고, 타 자펀드에서 약 6개월 이전에 해산 진행(주식에 대하여 평가실시)한 후 당 자펀드 계정에서 해산진행/ 주당 평가금액이 30%이상 차이 발생
- (사례 4) 피투자기업의 최근 중요한 영업 변동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예, 타 운용사의 최근 투자가격 존재)

및 실적	대규모 계약 체결 또는 체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관련 계약서 또는 양해각서 등		
	사업에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 (예 : 신규시설 투자· 시설증설 결정, 채무면제, 신물질·신 기술에 관한 특허권 또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양수도 중 요한 임상시험 단계 개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과금체계 결정·변경 등)		
지분 변동 관련	투자 이후 증자· 감자로 인한 지분변동 및 주요주주 변동사 항		
	CB, BW, Stock Option, RCPS 등 지분희석 가능성이 있는 증권 발행내역 및 발행조건		
평가 주요 정보	상장 여부(특히 코넥스 상장기업의 경우 활성시장 포함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기준일 전 3개월 간 일평균 거래금 액 및 거래 주수 제공)		
	평가일 기준 6개월 내 제3자 거래가격* 및 이와 관련 특 수관계인 또는 피투자기업 이해관계인의 개입 여부 * 프리보드 공시가격 및 장외시장 거래가격 포함		
	- 과거 Valuation 추세 및 적용평가방법 - Valuation 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 평가방법 변경 적용시 해당 사유		
	상환권을 보유한 증권 또는 채권의 경우 상환권 가치를 평 가하기 위한 필요자료 일체 * 이를 기초로 평가법인은 상환권 행사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후 상환권의 가치가 고려된 평가가치를 산출하여야 함. 또한, 상환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기타	주요 투자계약 조건 위반사항		
	기타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평가대상 법인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무집행조합원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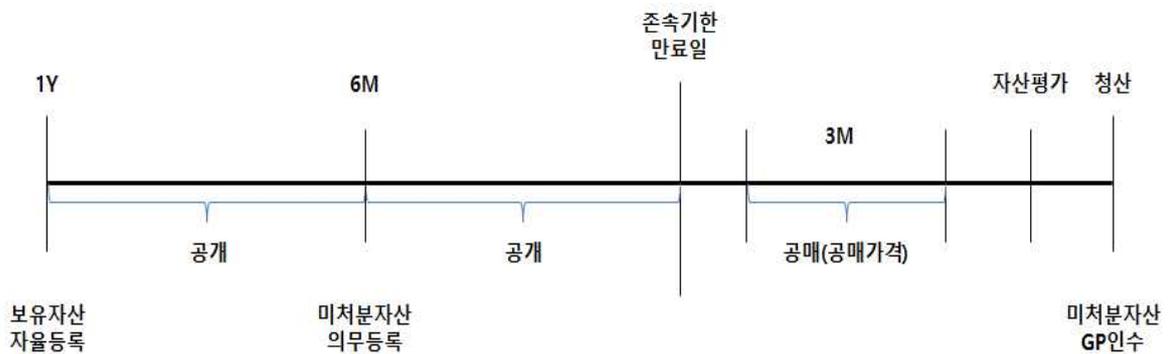
대표펀드매니저 : (인)

평가담당자 : (인)

② 벤처캐피탈 구주유통망 활용

- 조합 해산시, 비현금화된 자산에 대해 벤처캐피탈 구주유통망 (www.peinvestor.net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운영)을 통해 공개 매각 진행
 - 만기 12개월 이전 ~ 6개월 이전 : 보유자산 **자율** 등록
 - 만기 6개월 이전 ~ 존속기간 만료 : 보유자산 **의무** 등록
 - 만기 이후 : 보유자산 **의무** 매각(3개월)
- ※ 한국모태펀드 2012년 2차 사업 부터 선정된 자조합은 VC구주유통망 활용 부분이 규약에 반영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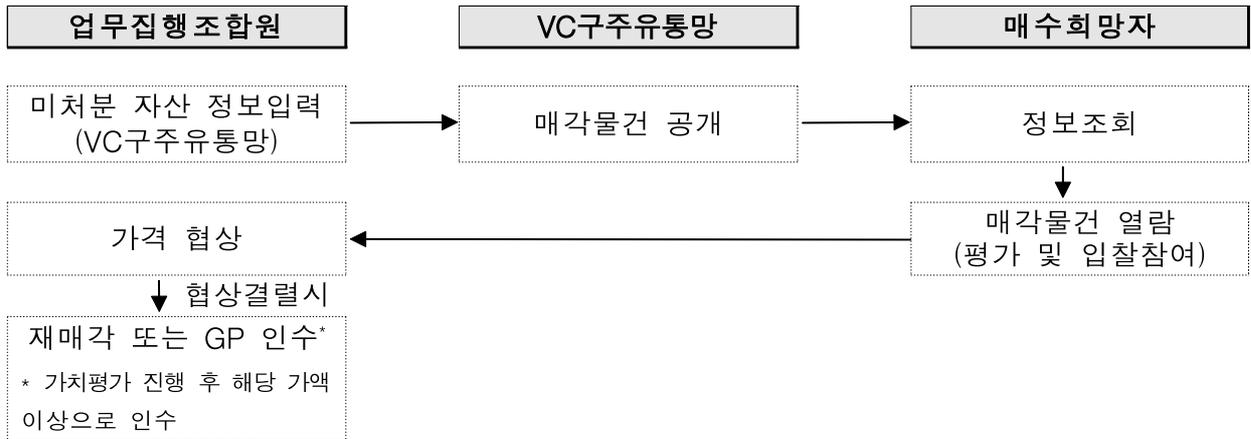
<구주유통망을 활용한 해산 절차>



- 운영절차

- 1) 조합만기 1년전~존속기한 만료일 : VICS → 투자자산전송(구주유통망[1325])에서 미처분 자산을 구주유통망에 등록 가능 (세부 안내는 www.peinvestor.net 자료실의 매뉴얼 참조)
- 2)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
 - 조합 만기 이후에는 미처분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조합원 동의가 필요
 - 따라서, 해산 총회에서 VC구주유통망을 활용하여 어떤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안전을 반영해야 함
 - 위의 안전이 의결되었다는 전제하에 아래 절차로 진행함

<VC구주유통망 활용>



7. 관리보수 조정 사항

- 자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업무집행조합원(특수관계인 포함)이 받은 아래의 수수료 등은 관리보수에서 조정하여야 함

관리보수 제외 항목	비고
·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와 직접 연관되어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수수료	부가가치세 제외
· 업무집행조합원의 직원이 투자대상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기타 업무감독 또는 경영자문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일체의 보수 또는 수수료	
·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상 지급받는 위약금 기타 일체의 금원	
·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공동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공동투자자 또는 공동투자자를 위하여 설립된 컨소시엄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 일체의 금원의 50%	
·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자문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일체의 금원	총회 일반결의를 득한 경우 제외

- 투자자산 감액시기 설정 착오 등 관리보수 산정 오류 발생으로 기 수령 관리보수 사후 환입 시, 조정된 관리보수 차액과 해당 금액에 대한 발생 이자*를 조합계좌로 환입하여야 함

※ (이자율) 조합계좌(MMDA 등)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

(이자 발생 기간) 계산 착오 발생시점(기 관리보수 지급일)부터 관리보수 환입일 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KVIC 사후관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8. 소액출자펀드에 대한 관리기준

- 한국모태펀드가 주요출자자가 아닌 자펀드(지분 10%미만)는 일반 유한 책임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관리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부담 경감
- 단, 50억원 이상 출자한 경우 기존 특별조합원 권한 일부 유지

종분류	소분류	모태펀드 (특별조합원)	모태펀드 (일반유한책임조합원*)	
			출자액 50억원 이상	출자액 50억원 미만
준법감시보고서 시행	준법감시보고서 시행	○	○	○
개최 전	관련 서류 접수	○	○	○
개최 후	투자계약서 업로드	○	○	○
회계감사인 변경	모태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회계감사인 선임	○	X	X
해산	자펀드 해산실사(해산 1개월전)	○	○	X
자펀드 실물검증	GP가 매월 보고한 조합재산현황 수탁은행과 비교	○	○	○
납입 및 배분 CF 점검	GP가 매월 보고한 납입 및 배분 Cashflow 점검	○	○	○
온기/반기 투자보고	온기/반기 투자보고	○	○	○
중간점검	자펀드 중간점검 (결성후 2년 경과시)	○	○	X
투자금 실사보고서	투자금 실사 및 보고	○	○	X

* 모태펀드가 일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조합은 앵커출자자의 관리기준에 따름

9. 자펀드 운용인력 변경처리 및 관리보수 삭감기준

① 기본방향

- 자펀드의 책임운용 강화를 위해 운용인력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도
 - 최소한 투자기간 경과 및 주목적 투자비율 충족후 변경되도록 유도
- 적정 대체인력 충원 등 조합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변경 귀책사유를 개인 및 운용사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변경횟수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처리
- 관리보수 삭감과 별도로 해당 참여인력에 대해 모태펀드 출자사업 시 감점 등 제재
- 운용중인 자펀드(청산중인 자펀드 제외) 운용인력의 수는 선정 당시의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규모에 따른 인력구성 요건을 준수
 - ▶(예시) 2018년 출자사업 공고문상 인력구성 요건

조합 규모	최소 인력 구성
300억 이하 (2017년 이전은 200억 이하)	2
300억 초과 ~ 800억 이하 2017년 이전은 200억 초과~800억 이하)	3
800억 이상	4

※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는 소관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② 운용인력 변경시 처리기준

- ◆ 기준규약 내용 반영 및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최대 삭감률은 20%를 유지
- ◆ 변경 승인여부 및 관리보수 삭감(안)*은 해당 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결정
 - 관리보수 삭감 필요시 특별결의를 통해 추진하되, 총회 개최전에 타 조합원과 협의를 추진
 - * GP 및 GP 특수관계인의 출자좌수는 의결 정족수 미산입
- ◆ 변경된 운용인력이 투심위원직을 겸임하고 있었던 경우,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운용인력변경과 함께 투심위원도 변경하여야 함을 유의

- 적용대상 자펀드 운용인력

구 분	정 의
대표펀드매니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또는 직원
기타 핵심운용인력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규약상 기재되어 있는 참여인력

주) “일반펀드매니저” : 2011년 이전 자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참여인력을 말하며, 변경승인 및 관리보수 삭감대상에서 제외(투자기간 경과)

- 관리보수 삭감률 산출기준

$$\text{삭감률} = \frac{\text{기준규약상 최대 삭감률 (20\%)}}{\text{변경횟수}} \times \frac{\text{귀책사유}}{\text{할인율}} \times \left[1 - \left(\frac{\text{운용기간(월)}}{\text{투자기간(월)}} \times 40\% + \frac{\text{주목적 투자액}}{\text{투자의무금액}} \times 60\% \right) \right]$$

- * 삭감 기준일이 포함된 년도의 관리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삭감률 적용
- * 대표펀드매니저가 2인일 경우 삭감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삭감률은 1/2로 적용
- * 삭감시점 및 기간 등 삭감액 반영 방법은 조합원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
- * 상기 산출기준에 의한 삭감률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의결한 삭감률을 우선함
- * 운용기간 경과 할인율 및 투자의무비율 달성 할인율 최대한도 각 0.4 및 0.6 적용
- * ‘주목적 투자액’이 ‘투자의무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 $\frac{\text{주목적 투자액}}{\text{투자의무금액}} = 1$ ’ 으로 적용

③ 관리보수의 삭감

- 1년 이내 2회 이상 관리보수 삭감 시 산정 기준 : 삭감 조치의 선후 관계없이 규약상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삭감

(예시) 관리보수 5% 삭감 조치 뒤 해당 연도 이내 다시 5% 삭감시 해당연도 관리보수의 총 10% 삭감(5% + 5%)

- 투자기간 이내 변경시

1) 결성후 1년 이내 변경시

구 분	삭 감 기 준
대표펀드매니저	6개월분 삭감 (할인없음)
기타 핵심운용인력	3개월분 삭감 (할인없음)

- * 사망, 질병으로 인한 변경은 비삭감
- * 가이드라인 상의 기준이 기준규약 상 연간 관리보수 삭감 한도와 배치될 경우 기준규약상 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

2) 결성 후 1년 이후 변경시

· 변경횟수 및 귀책사유 등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관리보수 삭감률 산출기준”에 따라 삭감률을 산출

· 변경횟수에 따른 할인율

누적 변경횟수	삭감여부	변경횟수 할인율
1회 이하	X	-
1회 이하 (단, 겸직으로 인한 변경시)	○	50%
1회 초과 ~ 2회 이하	○	50%
2회 초과	○	-

* 기타 핵심운용인력은 변경횟수 1회당 0.5회로 산정

* 겸직으로 인한 운용인력 변경은 누적 변경횟수가 1회 이하여도 관리보수 삭감

· 귀책사유에 따른 할인율

대상	변경처리 기준		삭감여부	귀책사유 할인율
	귀책 사유	의사표시		
핵심 운용인력 ^{주)}	퇴사(이직 등)	동의	○	50%
	사망, 질병	동의	X	-
	감독기관 제재, 법 위반	동의	○	-
	운용사의 신규조합 결성	반대	○	-
	운용사 내부 부서 이동 (단, 신규조합 결성 등을 이유로 편법적 부서이동시 변경에 반대)	조건부 동의	○	-

주) 핵심운용인력(개별 규약에 기재) = 대표펀드매니저 + 기타 핵심운용인력

- 투자기간 이후 변경시 : 관리보수 삭감 없음.

④ 관리보수 삭감률 산출예시

- 조합개요

조합기간	'13.05.09 ~ '20.05.08 (7년)	투자기간	4년
약정총액	300억원	관리보수	연 2%
투자의무금액	180억원	최대삭감률	규약상 20%
운용인력	대표펀드매니저 A, 핵심운용인력 B, C, D		

- 관리보수 삭감률 산출예시

예1) 대표펀드매니저 조기변경시

- 대표펀드매니저 A, 결성 후 5개월 뒤 개인사유 퇴사
⇒ 조기변경(결성 후 1년 이내)에 해당 하므로 관리보수 삭감(6개월분)

예2) 기타 핵심운용인력 1회 변경시

- 기타 핵심운용인력 B의 개인사유 퇴사(운용기간 3년 1개월 경과, 주목적 투자액 120억원 가정)
⇒ 결성후 1년 이후 변경이며, 누적 변경횟수가 1.5회(대편 1회 + 기타핵심 0.5회)이므로 관리보수 삭감 (당해 관리보수의 1.46%)

구 분	할인율
규약상 최대 삭감률=20%	-
귀책사유 할인율 적용 (퇴사)	50%
변경횟수 할인율 적용 (1회 초과 ~ 2회 이하)	50%
운용기간 경과 할인율 (A) : 30.83% * 운용기간(37개월)/투자기간(48개월) × 0.4 = 30.83%	30.83%
투자의무비율 달성 할인율 (B) * 주목적투자액(120억)/투자의무금액(180억) × 0.6 = 40.00%	40.00%

<산출식>

$\text{삭감률} = \frac{\text{기준규약상 최대 삭감률 (20\%)}}{\text{변경횟수 할인율}} \times \frac{\text{귀책사유 할인율}}{\text{할인율}} \times \left[1 - \left(\frac{\text{운용기간(월)}}{\text{투자기간(월)}} \times 40\% + \frac{\text{주목적 투자액}}{\text{투자의무금액}} \times 60\% \right) \right]$

※ 삭감률 = 20%×0.5×0.5×[1-(30.83%+40.00%)] = 1.4585% ≒ **1.46%**

10. 콜옵션이 부여된 조합 자산 배분

- 유한책임조합원의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지분매수권이 부여된 조합이 조합 원금 배분 시, 동일한 비율로 매칭한 수익을 함께 배분함이 원칙
예) 모태펀드 원금 10억원으로 5억원 수익 발생 ⇒ 원금 5억원(50%) 배분시 수익 2.5억원(50%) 함께 배분

III. 투자 및 사후관리

1. 투자 전(前) 확인사항

- 투자검토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투자 검토시 확인하여야함
 - 주요 매출이 투자금지 업종에서 발생하였다면 투자 불가
 - 국세체납 등의 사실이 있다면 투자심사보고서에 해당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투자 검토시 필수 확인 내용	확인 방법	비고
투자금지 업종 여부	- 주요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판단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용)	
창업자/벤처기업/기술 혁신형 중소기업/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여부	- 창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 벤처기업 : www.venturein.or.kr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www.innobiz.net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www.mainbiz.go.kr(자료실)	
부실기업(국세체납, 가압류, 소송 등) 여부	- 심사 및 자금 집행일 기준으로 국세체납 여부 등을 확인 (심사 전 확인 권장)	프로젝트 투자 포함

* 창업자 판단을 위한 사업 개시일에 대한 정의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1. 원칙 :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날로 하되 다음 기준을 따른다.

- ① 창업자가 법인형태로 신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이 사업개시일
-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예외로 한다

2. 예외 :

-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 사업과 같은 종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②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이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다만 ①의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

- ①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②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 상기 표는 창업넷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실무 중심 창업질의응답사례」 p. 14~
 p. 15에서 발췌한 것으로 참고목적으로만 활용 바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1_국세체납 기업 투자관련>

- (원칙) 투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계약서상의 피투자기업의 진술과 보증만 믿지 말고, 해당 기업의 국세체납 여부 등 재무상황을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피투자기업이 부도·폐업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거나 투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선관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사례) 투자당시 국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업무집행조합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 투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여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
- (조치사항) 투자금 회수, 임직원 문책, 관리보수 삭감 등

※(참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특수관계인 및 주요 출자자 등에게 ①투자하거나 그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② 신용공여 행위, ③ 기타 중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말함(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0조 5항)

2.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총회(결성총회)에서 승인받은 '투자의사결정기구 운영방안'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이하 '투심위')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함

구분	주요 내용	관련문서	비고
업무집행 조합원의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	<p><투자의사결정기구 운영방안 필수 삽입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심위에 한국모태펀드는 옵저버로 참여 · 투심위 운용방안 변경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승인 <p><권장 투심위 진행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위원(출자자 지명 위원 등) 찬성 없이도 승인 가능한 의결 구조¹⁾ · 규약에 적시된 사항 이외에는 투자와 관련된 제한 및 의무가 없는 구조(출자자, 대주주 또는 외부기관 포함) 	투자의사결정기구 운영방안	조합원 총회 결의사항
투심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상 '미투자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펀드 투자 대상 	규약	
투심위 개최 및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심위 개최 5 영업일 전까지 준법사항체 크리스트(서명 날인된 원본 스캔 PDF 파일)와 심사보고서를 VICS를 통해 통보 · 투심위 심사보고서에 주요투자조건,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시 제재방안 등 투자관련 주요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보고서에 <주요 투자조건 요약서>²⁾ 첨부 · 투자가 규약에 정한 의무투자(인정투자, 주목적투자, 특수목적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재³⁾ · 투심위 종료 후 즉시 주요한 투자조건이 기재된 투심위 의사록⁴⁾ (날인 필요)을 VICS를 통해 통보(기각 포함) · 투심위 개최 후 투자전 주요 투자조건 변경시 투심위 재개최⁵⁾ 	준법사항 체크리스트/ 심사보고서/ 투심위 의사록	개최는 투심위 5영업일전 통보/ 결과는 즉시 VCS 업로드

구분	주요 내용	관련문서	비고
복수 계정 투자시 준수사항 (이해상충 문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정간 이해상충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집행 조합원 내부 투자자금 배분 관련 지침 구비 해당 지침에 따라 각 계정별로 투자재원이 자펀드에 배분되는 의사결정의 근거, 과정을 명확화 필요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투심위 회의록에 펀드별 대표펀드매니저의 편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명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운용사 내부의 투자금 배분 지침	
투자금 분할 집행 시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 관리 등의 사유로 투자금을 분할하여 집행할 경우 분할 집행 사실 및 집행조건, 집행 완료 예상시기 등의 정보를 투자심사 보고서 및 투심위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 * LP지분 유동화 펀드의 타 조합 지분 인수에 따른 추가출자 의무 이행의 경우 예외 	심사보고서 / 투심위 의사록	투자금 분할 집행 1영업일 전까지 투심위 의사록 및 기 투자 집행 내역 등을 특별조합원에게 유선 및 이메일로 통보
의무투자 관련 증빙서류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정투자, 주목적투자, 특수목적투자에 해당될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조합별 관리철에 보관 창업자 또는 초기기업 판정과 관련하여, 업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의 관리철에 보관 	법인등기부등본/벤처기업인증서/ 특허증 사본/신주여부확인 가능서류 등	
투자 및 사후관리 담당심사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굴, 심사한 심사역(복수의 경우 기여율 기재) VICS를 통해 통보 사후관리 담당 심사역 기재 (심사역 변동시 담당 기간 포함) 	기여율 증빙 서류	
피투자기업 부실징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거래 부실(가압류, 소송 등 포함),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불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상기 해당시 부실징후 확인하였으나 종합적 판단의 결과로 투자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근거를 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투자금이 국세 체납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 	관련 증빙 서류	

1) 투심위 구성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2_투자심의위원회 구성관련>

- 프로젝트 투자에 있어 투자조합의 투자결정이 주요 출자자에 좌우되어 투자조합의 재산이 특정 회사의 사금고처럼 이용되는 등 투자조합의 설립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요구
- 주요출자자가 출자심의위원회 참여를 통해 투자조합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요구

2) 투자심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주요 투자조건 요약서(예시)

< 주요 투자조건 요약서 (예시, 기업 투자) >

구분	내용	비고
투자업체명	(주) 000	
총 투자금액	1,000,000,000원	
투자조합	0000조합 : 00억원 0000조합 2호 : 00억원 / 본계정 : 00억원	
동반투자내역 (타 GP 등)	총액 : 00억원(GP 포함) A조합(A창투) : 00억원 / B조합(B창투) : 00억원	
투자방식(형태)	보통주/우선주/CB/BW, 신주/구주	
투자단가	· 액면가 : 000원 · 투자단가(전환가) : 00000원 · 기업가치(투자후) : 000억원	
인수주식수	· 000주	
주요 조건	· 지분율 : 00.0% · 전환조건 : · 상환조건 : · 기타 주요 조건(리픽싱조건 등) :	
투자금 사용용도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 관련 이자율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시 제재 방안		

3) 의무투자 기준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인정투자	· 창업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1조 3항에서 정하는 투자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주투자 등) ·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PEF : 법에 의한 투자(위법한 투자가 아니면 모두 인정투자)	
주목적투자	· 규약 제31조 (투자의 방법) 1항 혹은 2항 등에 규정된 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대상 투자	
특수목적투자	· 규약 제54조 (특약사항)에 규정된 조합의 특수목적 투자의무비율 대상 투자	

4) 투심위 의사록 기재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필수 기재사항	피투자기업명(사업자번호), 프로젝트명, 투자형태, 투자금액, 투자단가, 주식수 등 주요 투자조건, 의결정족수 충족여부	
부수적 기재사항	투자재원 배분, 투자금 사용목적, 투자기업의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건 등 업무집행조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투심위 개최 후 주요 투자조건 변경 관련 사항

<사례 1 : 투심위 결의 내용과 달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 투자금액, 단가 등 계약의 주요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이전에 비해 자펀드에 더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 투심위를 재개최 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신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방식의 변경, 프로젝트 투자에서 투자처 변경과 같은 경우 반드시 투심위를 재개최한다)**

(예)

투자조건	사례
투자방식의 변경	전환사채 → 상환전환우선주
투자단가의 변경	주당 10,000원 → 주당 12,500원
프로젝트 회수액	수익의 20%, 3억원 한도 → 수익의 15%, 2억원 한도
프로젝트 회수기간	투자 후 3년 → 투자 후 4년
전환조건 변경	보통주와 1:1로 전환 → 보통주와 1:2로 전환

- 중요하지 않은 투자조건 변경 또는 자펀드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E-mail 등의 방법으로 유선보고 (모태펀드는 수시보고) 한 후, 투심위에 준하는 내부의사결정을 거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체결 이전 조합원들에게 문서로써 이 사실을 보고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예)

투자조건	사례
동반투자자 변동	3개 펀드 20억원 투자 → 2개 펀드 15억원 투자
상환조건 변경	발행일 X년 경과, 연복리 8% 적용 → 발행일 O년 경과, 연복리 6% 적용
기타특약 변경	Tag-Along → Drag-Along 및 이사 1명 선임권리
투자금 사용처 변경	운영비 → 설비자금 및 운영비
의무불이행 시 제재방안 및 이자율	연복리 10% 및 상환청구권 → 연복리 15% 및 상환청구권

<사례 2 : 투심위 6개월 이후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 투자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등 본질이 동일할 경우 별도의 투심위를 개최할 필요는 없으나, 업무집행조합원은 당초 심사보고서 대비 피투자기업의 변동상황 (영업 및 재무)을 추가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을 권고

3. 투자계약 체결

- o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심위 결의 후 투자기업과 투자계약 체결(계약서 작성)시 다음 사항 고려 필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투자계약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심위에서 의결된 투자심사보고서상 투자조건과 동일한 투자계약서 작성 · 심사보고서와 투자계약서 사이에 주요투자조건이 일치하지 않거나, 투자계약서에서 근거법령 및 규약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집행일로부터 투자잔액에서 제외(규약 해당사항이 있는 자펀드) · 심사보고서에 투자기업의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이자율은 개별 조합 규약의 관련 내용을 따르며, 이를 투자 계약서에 반영 	
투자계약서 특별조합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조합원에게 VICS를 통해 투자계약서 제출 · 투자계약서 제출시 VICS를 통해 투자조건 일치여부 및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확인 · 투자계약서 제출시 <투자계약서 주요 투자조건>¹⁾ 별도 첨부 파일로 동시 제출(2개 업로드) 	투자계약서 및 투자계약서 주요 투자조건 업로드
투자금 사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투자금 사용처를 투자계약서에 명시 · 사용처 실사 근거 및 위반시 제재방안 등 명시 ²⁾ · 투자기업의 중요 금전거래 및 투자 사항 관리 포함 	
대상거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업이 투자금액을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용도로 자금 집행하기 전에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방안과 발생시 처리방안을 투자계약서에 반영 · 투자업체가 투자금액을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으로 자금 집행하기 전에 대상거래를 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대상거래에 대한 자금출처를 파악하여 특별조합원에게 보고 	
이면계약서 작성 금지	법령에서 금하는 이면계약서 작성 금지 ³⁾	

투자계약서 투자금 회수조항	·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금회수 조항 명시 ⁵⁾	
----------------------	--------------------------------------	--

1) 투자계약서 주요 투자조건(예시)

< 투자계약서 주요 투자조건(예시, 기업 투자)>

구분	주요 내용	계약서
투자업체	(주) 000	00조 0항
총 투자금액	1,000,000,000원	00조 0항
투자조합	0000조합 : 5억원 0000조합 2호 : 5억원	00조 0항
투자방식(형태)	보통주/우선주/CB/BW, 신주/구주	00조 0항
투자단가	· 액면가 : 000원 · 투자단가(전환가) : 000원 · 기업가치(투자후) : 000억원	00조 0항
주요 조건	· 지분율 : 10% · 전환조건 : · 상환조건 : · 기타 주요 조건 : 리픽싱 조건 등	00조 0항
투자금 사용용도		00조 0항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시 제재 방안		00조 0항
투자금 사용처 실사		00조 0항
대상거래 인지방안		00조 0항
대상거래 발생시 처리방안		00조 0항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 관련 이자율		00조 0항

2) 투자금 목적외 사용 관련(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³⁾ 투자금 목적외 사용>

- (원칙) 피투자기업은 투자계약서상 투자목적외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 집행조합원은 이를 사후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
- (사례) 투자계약서상 투자목적(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관계사 차입금상환 및 지분매입에 자금을 사용
- (조치사항)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투자금을 회수, 관련 임직원 문책 등

3) 이면계약 관련 법령 해석 사례

<법령 해석 사례(법무법인 태평양)_이면계약>

* 이해를 돕기 위한 법무법인의 해석 사례로 공식적인 법률 해석은 아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10조 4항 8호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3항을 고려할 때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정식투자관련 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설정하는 이면합의”로 해석
- “부당한 목적” 이라 함은 창업지원법 입법취지 및 창투조합 설립목적에 잠탈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나 창업투자조합이 투자를 받는 중소기업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창투조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
- “이면계약 ”과 본계약에 부수되는 계약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주주간 합의서 및 주식인수계약서를 체결 및 본 계약서의 애매한 문구 등을 보완하는 계약서 등을 이면합의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4) 투자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특별조합원과 사전협의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E-mail 등의 방법으로 ①조합원들에게 사안에 대하여 우선 보고한 후, ②투심위에 준하는 내부의사결정을 거쳐 계약을 변경 체결한다.
(의사결정에 따른 근거 유지)

5) 투자계약서 투자금 회수조항 (2018.6.28. 이후 결성 조합)

- [별첨4. 투자계약서 투자금 회수조항 예시]를 참고하여 반영.
- 모태펀드 자펀드에서 투자한 투자기업(또는 그 임직원)이 타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투자금 회수 근거

4. 피투자기업 사후관리

-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 후 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투자기업 성장지원시 아래 사항을 고려한 사후관리 필요
- 투자기업에 대하여 각사의 기준에 따라 피투자기업 사후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마케팅 채널 개척, IPO 관련 컨설팅, 추가펀딩 지원, 인력지원 등 투자기업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 구축 노력 필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투자기업과 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펀드 투자금의 사용용도 집행완료 이전에 특수관계인과 자금거래(차입금 상환, 자금대여 등) 발생 여부 확인 · 발생시 해당 재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명과 철저한 관리 필요 	
재무구조 부실화 기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업 중 재무구조 부실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그 대응방안 수립·실시 필요 · 재무구조부실화 진행, 감액, 휴·폐업 발생시 특별조합원에 즉시 수시보고 	
복수계정 공동투자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계정과 공동투자한 후 매각시 원칙적으로 계정별로 동일한 시점·조건·비율로 매각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투자, 지분 투자와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원칙에 벗어날 경우 다음의 조치사항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에 이해상충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 원칙, 의사결정의 근거(각 계정별 대표펀드매니저의 매각에 대한 견해차이 또는 조합 만기임박 등)를 명확히 하여 조합원에게 통보할 것 - 미투자자산운용으로 복수의 계정에서 동일한 상장주식을 취득, 매각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 적용 · 이해상충 여부 판단시 매각조건 뿐만 아니라 매각원칙의 일관성 및 매각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사전보고 권장 	
투자기업별 등급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사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등급부여 · 등급에 따른 영업, 재무, 마케팅, R&D 분야의 체계적 지원 통한 투자기업의 가치 제고 · 등급분류에 따른 사후관리 차등화(등급별 방문 및 접촉 빈도 원칙 설정)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특별관리기업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폐업·부도 등 법적조치 이외에 회수불가능한 경우 · 자펀드의 규모 대비 투자규모가 20% 비율 이상인 경우 · 특별관리기업으로 분류하고, 사후관리 활동을 집중하고, 차별화된 사후관리를 진행 후 그 경과를 반기 영업보고서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 기록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업의 가치 향상 위해 투자기업 경영(전략, 재무, 영업, 마케팅, R&D 분야, Head hunting, 사외이사참여)에 업무집행조합원이 기여한 구체적 역할 출자자에게 보고 · 현재 투자보고회(반기별 영업보고)의 보고양식 중 ‘투자기업별 현황’을 통해 출자자에게 업무집행조합원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적극적 보고 	

o 기타 추가 보고사항

(1) 피투자기업의 고용인원에 대해 VICS를 통해 입력하고, 투자기업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첨부하여 보고 필요

- 보고시기 : 매 분기 말로부터 15영업일 이내

(2)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정보활용 동의서 징구 [별첨3]

- 피투자기업에 대해 투자 진행시, 한국모태펀드의 SIMS 보고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및 전산시스템(VICS) 업로드

- 동 정보활용 동의서는 이미 SIMS에 취합된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서로, 해당 동의서를 근거로 한국모태펀드가 피투자기업에게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음

- 참고 : SIMS 운영 근거

- ▶ 국무총리훈령 제611호(중소기업정책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4(통합관리시스템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16-57호
- ▶ “예산 사업, 조세 등 비예산지원 등 중소기업지원 제도를 총망라하는 디렉토리를 구축할 것”(국가재정전략회의 '14.5.2.)

1) 복수계정 투자 후 회수 관련(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4_투자조합간 수익금 배분 부적정>

- (원칙)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투자자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및 모든 출자자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사례) 조합 청산 등으로 조합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일부 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처한 상황(예, 폐업)이 충분 고지되어야 한다.
- (조치사항) 부적절하게 수익금 배분한 금액 및 경과이자에 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부담으로 보전조치

【 별첨 1 】 조합 사후관리 주요 체크리스트 (예시)

1)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구분	주요 체크사항
업무집행 조합원의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심위에 한국모태펀드가 참관자로 참여하는가? · 투심위 운용방안 변경시 조합원 총회 승인을 얻었는가? · 외부위원 찬성 없이도 승인 가능한 의결 구조인가? · 규약에 적시된 사항 이외에는 투자와 관련된 제한 및 의무가 없는 구조(출자자, 대주주 또는 외부기관 포함)인가?
투심위 개최 및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심위 개최 5 영업일 전까지 날인된 준법사항체크리스트 및 심사 보고서를 VICS를 통해 통보했는가? · 심사보고서에 주요 투자조건 요약서가 첨부 되었는가? · 규약상 의무투자가 기준에 맞게 정확히 기재되었는가? · 투심위 종료 후 즉시 중요한 투자조건이 기재된 날인된 투심위 의사록을 송부하였는가? · 투심위 개최 후 투자 전 주요 투자조건 변경시 투심위를 재개최하였는가?
복수 계정 투자시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정간 이해상충문제 해소를 위해 투자자금 배분 관련 지침을 구비하였는가? · 해당 지침에 따라 각 계정별로 투자재원이 배분되는 의사결정의 근거 및 과정을 명확화 하였는가?
투자금 분할 집행 시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 집행 사실 및 집행조건, 집행 완료 예상시기 등의 정보를 투자심사보고서 및 투심위 의사록에 기재하였는가?
의무투자 관련 증빙서류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투자, 주목적투자, 특수목적투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조합별 관리철에 보관하였는가? · 창업자 또는 초기기업 판정과 관련하여, 업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의 관리철에 보관하였는가?
투자 및 사후관리 담당심사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 심사한 심사역(복수의 경우 기여율 기재) VICS를 통해 보고하였는가? · 사후관리 담당 심사역(심사역 변동시 담당 기간 포함)을 VICS를 통해 보고하였는가?
피투자기업 부실징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징후 여부(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거래 부실(가압류, 소송 등 포함),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불량 등)를 확인하였는가? · 상기 해당시 부실징후 확인하였으나 종합적 판단의 결과로 투자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근거를 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투자금이 국세 체납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는가?

2) 투자계약 체결

구분	주요 체크사항
투자계약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보고서상 투자조건과 동일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가? · 심사보고서에 투자기업의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건을 명시하였는가? · 이와 관련한 이자율은 개별 조합 규약에 의한 이자율 이내인가?
투자계약서 특별조합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조합원에게 VICS를 통해 투자계약을 제출하였는가? · 투자계약서 제출시 VICS를 통해 투자조건 일치여부 및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투자계약서 제출시 <투자계약서 주요 투자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였는가?
투자금 사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투자금 사용처를 투자계약서에 명시하였는가? · 투자금 사용처 실사 근거 및 위반시 제재방안 등을 명시하였는가? · 투자기업의 주요 금전거래 및 투자 사항 관리가 포함되었는가?
대상거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업이 투자금액을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용도로 자금집행하기 전에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방안과 발생시 처리방안을 투자계약서에 반영하였는가? · 투자업체가 투자금액을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으로 자금집행하기 전에 대상거래를 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대상거래에 대한 자금출처를 파악하여 특별조합원에게 보고하였는가?
이면계약서 작성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서 금하는 이면계약서가 작성되었는가?

3) 피투자기업 사후관리

구분	주요 체크사항
투자기업과 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펀드 투자금의 사용용도 집행완료 이전에 특수관계인과 자금거래(차입금 상환, 자금대여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특수관계인과 자금거래 발생시 해당 재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명과 철저한 관리를 하였는가?
재무구조 부실화 기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구조 부실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그 대응방안 수립·실시하였는가? · 재무구조부실화 진행, 감액, 휴·폐업 발생시 특별조합원에 수시보고하였는가?
복수계정 공동투자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계정과 공동투자한 후 매각시 원칙적으로 계정별로 동일한 시점·조건·비율로 매각하였는가? · 다만 원칙에 벗어날 경우 다음의 조치사항을 진행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사항) 조합원들에게 사전보고 절차를 진행했는가? - 사후에 이해상충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원칙, 의사결정의 근거(각 계정별 대표펀드매니저의 매각에 대한 견해차이 또는 조합 만기임박 등)를 명확히 하여 조합원에게 통보했는가? - 미투자자산운용으로 복수의 계정에서 동일한 상장주식을 취득, 매각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 적용했는가?
투자금 분할 집행 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 분할 집행 1영업일 전 투심위 의사록 및 기 투자 집행 내역 등을 특별조합원에 유선 및 이메일로 통보하였는가?
투자기업별 등급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등급을 부여하였는가? · 등급에 따른 영업, 재무, 마케팅, R&D 분야의 체계적 지원 통한 투자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했는가? · 등급분류에 따른 사후관리를 차등화 하였는가?
특별관리기업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관리기업을 분류(휴업·폐업·부도 등 법적조치 이외에 회수 불가능한 경우, 자펀드의 규모 대비 투자규모가 20% 비율 이상인 경우 등)하여 차별화된 관리를 하는가?

【 별첨 2 】 회계감사인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회계감사인 체크리스트

회 계 감 사 인	
회계법인	
담당회계사	
담당조합	

분 류	기 준	확 인	
		담당회계사	GP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제출 최근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준 공인회계사 수 20인 이상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30억 원 이상		
기타	모태펀드 자펀드 감액가이드라인 및 기타 모태펀드가 제시하는 Audit Instruction 등 숙지		

1. 상기 회계감사인은 모태펀드 자조합 회계감사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자격요건 미충족, 모태펀드 자펀드 감액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업무 부실, 모태펀드 업무관련 비협조 및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 확인 시, 향후 2년간 모태펀드 자조합 회계감사인 참여가 제한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XX년 월 일

■ 회계법인 :

■ 운 용 사 :

■ 직 위 :

■ 직 위 :

■ 성 명 : (인)

■ 성 명 : (인)

【 별첨 3 】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p>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모태펀드 투자기업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p> <p>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투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p> <p style="text-align: right;">(<input type="checkbox"/>) 위 사항에 동의함</p>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p>① (기업식별정보)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등 영업소 소재지, 설립연월일, 종목, 대표자 성명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p> <p>②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신용정보로서 대출, 보증 등 거래내용 관련 정보 및 연체, 부도 등 신용도 관련 정보 및 판매명세, 수주실적, 재무제표 감사의견,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 관련 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p> <p>③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모태펀드 투자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개·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p> <p>④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p> <p style="text-align: right;">(<input type="checkbox"/>) 위 사항에 동의함</p>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p>○ 모태펀드 출자 펀드 운용기관(창업투자회사 등),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운용기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부)</p> <p style="text-align: right;">(<input type="checkbox"/>) 위 사항에 동의함</p>
■ 동의 효력기간	<p>○ 모태펀드 투자기업이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p> <p style="padding-left: 20px;">*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p> <p>○ 기업정보 수집 시점 : 모태펀드 투자일 이전 5개년부터 투자 이후 10년간</p> <p style="padding-left: 20px;">*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p> <p style="text-align: right;">(<input type="checkbox"/>) 위 사항에 동의함</p>
<p>※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p>	
<p>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하여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20 년 월 일</p> <p>기업명 ○ ○ ○</p> <p>대표자 ○ ○ ○ (인)</p>	

【 별첨 4 】 투자계약서 투자금 회수 조항 예시

(예시1) 제[*]조 (투자자의 풋옵션)

① [투자자]는 [회사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업무 관련 범죄 행위,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관련 법령 위반)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각목에서 정한 금융 관련 법령 위반 행위 등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발생하여 그에 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회사의 대주주]에게 [회사 발행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가지며, 풋옵션 행사에 따라 성립되는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 [투자자]
2. 매수인: [회사의 대주주]
3. 매매목적물: [회사 발행 주식]
4. 매매대금 지급일: 본조 제2항에 따라 [투자자]가 [회사의 대주주]에게 발송하는 풋옵션 행사서신에 명시되는 풋옵션 행사일
5. [회사 발행 주식]의 소유권이전일: 매매대금과 (지연이자가 발생한 경우)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한 날
6. 매매대금: [투자자]의 [회사 발행 주식] 취득시 취득 원금 및 이에 대하여 [투자자 취득일]부터 매매대금지급일까지 [이율]에 의한 금원
7. 매매대금 지급방법: [회사의 대주주]는 매매대금 지급일에 [투자자]의 [**]계좌에 즉시 사용이 가능한 자금의 형태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투자자]는 동시에 [회사 발행 주식]의 주권을 [회사의 대주주]에게 양도한다.
8. 지연이자: [회사의 대주주]가 매매대금을 풋옵션행사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에 대하여 풋옵션행사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의 연체가산이자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이자로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9. [투자자]는 [회사의 대주주]에게 [회사 발행 주식]을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다.

② [투자자]가 본조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풋옵션의 행사의사, 풋옵션행사일 및 예상매매대금을 명시한 [확정일자 있는 서신(이하 “풋옵션 행사서신”이라 한다)]을 풋옵션행사일로부터 [이(2)개월] 전까지 상대방인 [회사의 대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가 [회사의 대주주]에게 풋옵션 행사서신을 발송한 날에 [투자자]와 [회사의 대주주] 사이에 본조 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예시2) 제[*]조 (위약벌)

회사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업무 관련 범죄 행위,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관련 법령 위반)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각목에서 정한 금융 관련 법령 위반 행위 등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발생하여 그에 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위약벌로 [*](기준규약에 따라 투자금의 15% 이내의 금액)원을 지급하기로 확약한다.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 후 관 리 가 이 드 라 인
(문 화 콘 텐 츠 분 야)

I.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적

-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문화콘텐츠 분야)은 업무집행조합원이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를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결성 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제공하는데 있음

2. 적용범위

-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문화콘텐츠 분야)은 한국모태펀드의 문화·영화계정 출자 자펀드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그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법 및 그 밖의 한국벤처투자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짐
- 본 내용은 한국벤처투자의 권고사항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는 아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 관리를 위한 세부 적용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임. 가급적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조하여 업무 처리할 것을 권고함
-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은 향후에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며, 만약 본 가이드라인이 업무집행조합원 자체 업무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한국벤처투자 담당 심사역과 협의를 통해 본 가이드라인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음
- 본 가이드라인에 사례로 제시되는 부분은 당사에서 임의로 재편집한 내용으로 참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업무에 인용할 때는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자펀드 운영 가이드라인은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공통사항)을 참고하기 바람

II. 문화 · 콘텐츠 자펀드 운용

1. 투자 대상

① 투자 가능 분야

구분	문화계정	영화계정
2011년 1차 사업 이전 선정조합	<u>문화산업분야만 투자가능</u>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는 <u>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u> 를 따름	
2011년 1차 사업 이후 선정조합	<u>문화산업 이외 분야에 결성 총액의 10% 이내에서 투자 가능</u> · 해당금액은 별도계좌 관리, 수익률 합산 계산, 재투자는 해당계좌 내에서 관리해야 함	<u>한국영화 투자 의무 비율 충족을 전제로 타 분야 투자가능</u>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 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② 분야별 세부 투자 대상(기준 제시가 필요한 분야만 포함)

기획개발 (제작초기)	<p><u>제작초기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음. 단, 아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투자대상으로 인정</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 메인투자 계약 전과 시나리오·캐스팅(주·조연) 완료 전(동시 충족) * 2013년 2차 사업 이전 선정조합은 ‘메인투자 계약 전’ 2. 애니: 메인투자 계약 전 3. 공연: 대관 계약 전 4. 드라마: 방송사 편성 계약 전 5. 게임: 퍼블리셔 계약 전&CBT 전 6. 웹툰제작: 유통 플랫폼(인터넷 포털서비스 등)에 연재계약 전 7. 1인 창조기업이 제작하는 프로젝트 8. 음원 : (온/오프라인) 유통사와의 유통계약 전 9. 기타 특별조합원이 초기단계라고 인정하는 경우
CG·3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순제작비의 15%이상</u> CG를 활용한 VFX(visual effect) 등 영상효과 프로젝트 <p>=> 투자 시 순제작비 예산의 15%이상인 CG관련 비용으로 책정되어야하며, 프로젝트 완료 이후 실제 집행한 순제작비 금액(예비비인 순제작비의 5%제외)의 15%이상도 CG관련 비용으로 집행되어야 함</p>

	2. 투자 당시 직전 사업연도 또는 조합의 투자기간 내 사업연도 매출의 50% 이상이 컴퓨터그래픽기술 관련 매출 기업
콘텐츠 영세기업	<p>콘텐츠 영세기업¹⁾ 및 제작초기단계²⁾ 프로젝트(업체별 투자한도는 5억원)</p> <p>1) 콘텐츠 영세기업 : 콘텐츠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①자본금 10억원 이하, ②매출액 10억원 이하, ③종업원 10인 이하 조건 중 2가지 이상 충족하는 기업 및 동 기업의 프로젝트 => 상기 해당하는 투자 이후 3년 이내 후속투자 하는 경우도 인정</p> <p>2) 제작초기단계 : 기획개발(제작초기) 정의 준용</p>
융합 콘텐츠	문화산업 장르별 융합이 이루어진 콘텐츠 또는 문화산업과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등 융합형태의 콘텐츠
문화-ICT 융합	문화콘텐츠(영화, 드라마, 공연, 디지털, 애니메이션 등)의 기획, 제작, 유통·판매와 ICT 기술이 연계된 문화-ICT융합 콘텐츠를 의미
기획개발 (영화계정)	<p>시나리오 완성 이전 단계. 단, 다음의 투자방침 준수</p> <p>* 상장기업(코스닥 등록기업 포함) 및 계열사 배제, 제작사 지분투자 금지, 제작 중인 영화 투자금지, 개발비 투자 후 3개월 이내 제작 착수 금지, 프로젝트 별 3억원 초과 투자금지</p>
중저예산 한국영화	<p>순제작비 50억원 이내이며 마케팅비는 제한 없는 한국영화</p> <p>=> 투자 시 순제작비 예산이 36억원 이내여야 하며, 프로젝트 완료 이후 실제 집행한 순제작비 금액(예비비인 순제작비의 5%제외)도 36억원 이내여야 함</p>

2. 인정 · 주목적 · 특수목적투자 비교(창업투자조합 기준)

① 인정투자, 주목적투자, 특수목적투자 비교

구분	인정투자	주목적투자	특수목적투자
정의	- <u>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u> 투자의 범위에 따른 투자	- <u>규약 제31조 1항 투자의 방법</u> 에 따른 투자	- <u>규약 제 54조 기타특약사항</u> 따른 투자 (*) '15년 2차 이후 선정 조합 일부는 제31조 2항에 따른 투자임

구분	인정투자	주목적투자	특수목적투자
투자 대상	<p>-(신주, CB, BW) 증권 시장(코넥스 제외)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p> <p>-(프로젝트) 증권시장(코넥스 제외)에 상장되지 아니한 중소기업 제작 프로젝트</p>	<p>-(신주, CB, BW) 증권 시장(코넥스 제외)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p> <p>-(프로젝트) 증권시장(코넥스 제외)에 상장되지 아니한 중소기업 제작 프로젝트</p>	<p>-중점분야(공연, 드라마, CG/3D, 애니메이션, 게임, 제작초기 등)에 대해 주목적 투자의 방법으로 투자</p> <p>-중점분야가 없는 문화산업일반 투자 조합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p>
투자 의무 비율	-등록 이후 3년 동안 약정 총액의 40%	-2년간 00%, 4년간 00% (*) 구체적인 비율은 개별 규약에서 정함	-투자기간동안 총약정금액의 00% (*) 투자기간 종료 시점에 충족여부 판단 (**)구체적인 비율은 개별 규약에서 정함
특이 사항		<p><u>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개별 규약마다 상이</u></p> <p>(2010년 1차 출자사업부터 반영)</p> <p>-한국영화 제작 이후 영화 배급·유통 단계(개봉일 이전 60일 이내)에 투자되는 경우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 산정시 제외</p> <p>(*) <u>개봉일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u></p> <p>(**) <u>개봉일로부터 60일 이전 투자인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판단, 투자 당시</u></p>	

구분	인정투자	주목적투자	특수목적투자
		<p>에는 개봉일로부터 60일 이전 투자라고 판단하였으나 개봉이 일찍 이루어져 개봉 전 60일 이전 투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투자의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p>  <p>(2015년 1차 출자사업부터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배급하는 한국영화 프로젝트에 투자 금지 (단,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제외) -주요 출자자 제작 프로젝트 투자금지 -출자자 관련 프로젝트 중 제작완료 후 배급·유통 단계 프로젝트 투자금지 <p>(*)제작완료는 크랭크업을 의미함. 크랭크업 일자는 <u>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u> 기준으로 함</p>	

<프로젝트 투자의무 비율 산정 예시>

(예시1)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영화 프로젝트에 개봉 전 30일 이전에 투자
=> 인정투자비율 산정시에는 포함되지만 주목적투자 비율 산정시에는 제외

(예시2)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영화 프로젝트에 개봉 60일 이전 투자

라고 판단되어 투자하였으나 개봉이 일찍 이루어져 개봉 30일 이전 투자가 된 경우

=> 투자당시에는 인정, 주목적, 특수목적 투자비율에 포함했다라도, 개봉일 확정 이후 변경

(예시3) 인정투자, 주목적투자 해당여부

구분	상장되지 아니한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프로젝트
개봉 60일 이전 투자	인정투자 & 주목적투자
개봉 60일 이후 투자	인정투자

(*) 특수목적 해당여부는 개별 규약에 따라 판단

② 인정투자, 주목적투자, 특수목적투자 포함 관계(프로젝트 투자)

- 인정 및 주목적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투자는 ‘창업자’, ‘벤처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었음

(예시)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상장(코넥스 제외)되지 아니한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프로젝트 투자도 인정투자 및 주목적 투자 비율에 포함됨

- 단, 인정투자는 프로젝트 투자시점에 제한이 없으나 주목적투자는 프로젝트 투자시점에 제한을 받음.

(예시)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개봉 전 30일 이전에 투자하는 경우 인정투자에는 포함되지만 주목적투자에는 포함되지 않음

- 특수목적투자는 주목적투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므로 특수목적투자<주목적투자 관계가 성립

(예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이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개봉 30일 전에 투자하는 경우 주목적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목적투자에도 포함되지 않음

3. 주요 출자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거래

① 법, 규약에 따른 투자 제한 사항

구분	주요출자자와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거래
용어의 정의	<p>‘주요출자자’라 함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u>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경우</u> 그 본인인 출자자를 말함(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0조 4항) 	<p>‘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 발표
	<p>‘주요출자자와 거래’라 함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u>주요출자자가 직접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하는 행위를 말함</u> 	<p>‘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거래’라 함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u>직접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하는 행위를 말함</u>
창업지원법에 따른 거래 제한	<p>-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u>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거래하는 경우 가능함(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1호 라목 의 4))</u></p>	<p>- 원칙적으로는 금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이지만, 예외 조항(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가 가능함</p> <p>1) 중소기업과 공동제작을 할 경우 : 규정 제6조 제6항 “ 2개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개발 또는 제작에 참여하고 개발 또는 제</p>

구분	주요출자자와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거래
		<p>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 비중이 70% 이상인 사업</p> <p>2) 해외 진출 프로젝트 : 규정 제 6조 제6항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제7조의2 제1항 제 2호의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순제작비 중 중소기업 참여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p>
<p>규약에 따른 거래 제한</p>	<p>- 관련 법에서는 조합원 전원동의시 주요 출자자와의 거래가 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u>규약에서는 정책 목적상 글로벌 펀드를 제외하고는 금지</u></p> <p>※ 관련 법에서는 주요 출자자가 메인투자, 배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제한이 없으나 <u>문화계정 출자조합 규약에서는 정책목적상 주요 출자자가 메인투자, 배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투자를 제한</u></p> <p>(주요출자자가 메인투자, 배급하는 프로젝트 제한 내용)</p> <p>- 주요 출자자가 메인투자, 배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금액은 조합 전체 투자 누</p>	<p>- 관련 법에서는 일정 요건 충족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허용하고 있으나 <u>규약에서는 정책목적상 글로벌 펀드를 제외하고는 금지</u></p> <p>※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메인투자, 배급하는 경우에는 투자가능,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조합의 주요 출자자인 경우에는 주요 출자자와의 거래 제한 규정 적용</p> <p>(2015년 1차 선정조합부터 반영)</p> <p>-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배급하는 한국영화 프로젝트에 투자 금지(단,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제외)</p>

구분	주요출자자와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거래
	<p>계액의 00%이내여야 함(재무적출자자 펀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해산 시점에 비율 준수 여부 판단, 업무집행조합원은 주요 출자자가 메인투자, 배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비율을 상시 관리 - 주요 출자자가 한군데 이상인 경우 주요출자자별로 비율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출자자에 대한 투자금액의 합으로 비율 적용 - 출자자 관련 프로젝트 중 제작완료 후 배급·유통 단계 프로젝트 투자금지 <p>(*)구체적인 투자제한 대상은 개별 규약 참고</p>	<p>(*)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개별 규약 참고</p>

② 주요출자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거래 요약

구분	주요출자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작	<p>금지</p> <p>(단, 글로벌펀드의 경우 조합원 전원동의 시 가능)</p>	<p>금지</p> <p>(단, 글로벌펀드의 경우 문전사 설립 시 가능)</p>
메인투자 배급	<p>가능</p> <p>(단, 투자누계액의 00%이내에서 가능)</p>	<p>가능</p> <p>단, 글로벌펀드의 경우 문전사 설립 시 가능)</p>

(*)구체적인 투자제한 대상은 개별 규약 참고

4. 관리보수

가. 문화계정

- 조합별 규약에 정해진 기준 및 지급시기에 따라 관리보수 지급

나. 영화계정

① 관리보수 지급 규정

- ('15년 이후 결성조합) 조합별 규약에 정해진 기준 및 지급 시기에 따라 관리보수 지급
- ('13년 이전 결성조합) 규약상 정한 투자금액(*)을 정해진 기간에 투자할 경우 추가 관리보수를 지급

(*) 투자금액은 인정/주목적/특수목적투자에 상관없이 모든 투자금액을 의미함(미투자자산 운용 제외)

- 추가 관리보수는 매 사업연도 결산에 대한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하되, 그 범위는 동 사업연도로 한정함

(예시) 2011.6.2.(결성일)~2011.12.31.까지의 추가 관리보수는 2012년 3월에 개최하는 2011년도 결산총회에서 승인. 단, 2011.12.31. 기준으로 연도별 투자 이행 계획이 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III. 프로젝트 투자

1. 프로젝트 투자의 정의

-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정의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의 2에서 규정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의2(프로젝트투자) ① 규칙 제9조제2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분야"라 함은 다음을 말하며,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동 분야에 투자하는 행위를 "프로젝트 투자"라 하고, "프로젝트 투자"의 투자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을 "프로젝트"라 한다.

1.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총비용중 연구개발비용이 50%이상인 경우)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발명진흥법에 의한 산업재산권의 창출·매입·활용
4.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의한 스포츠산업
5.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기타 패션디자인 등 중소기업청장이 프로젝트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

- 인정투자 비율에 포함되는 프로젝트 투자의 대상에 대해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음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는 투자의무 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2. 해외 프로젝트 투자

-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해외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함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투자대상 및 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 제4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외 기업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2. 해외 기업이 발행하는 무담보주식연계형 채권의 인수
3. 해외 기업이 제작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약정되었으며, 제작 분야가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을 말한다.)인 제7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 투자
4. 생략

- ‘국내 중소기업의 제작 참여’는 후반작업 등의 참여를 의미하며 국내중소기업의 참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

3. 투자 의무 비율 산정 기준

- ① SPC설립 등으로 인해 자펀드의 투자금이 입금되는 투자기업과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제작사가 상이한 경우
- 법과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 의무 비율 산정 시 투자기업이 아닌 제작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프로젝트 투자 투자 의무 비율 산정 기준 예시>

(예시1) ○○○○가 제작하는 영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되 투자금은 자금을 관리하는 △△△△△에 입금

- 제작사○○○○: 2004년 설립된 회사로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사항이 없음
- 투자금입금회사 :△△△△△: 2010년 설립된 중소기업에 해당함

=> 제작사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투자비율 산정 에서 제외

(예시2) □□엔터테인먼트는 영화 ●●를 제작하기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조합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

- 제작사 □□엔터테인먼트 : 2011년 설립된 코스닥 상장된 중소기업임
- ●●문화산업전문회사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2015년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창업자에 해당함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형식적으로는 창업자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인 제작사가 비상장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투자 비율 산정에서 제외

4. 원금보장성 프로젝트 투자

구분	2011년 2차사업 이전 선정 조합	2011년 2차사업 이후 선정 조합
법	<u>투자가능하되, 인정투자비율에서 제외</u> (단, 확정된 수익 요구하는 투자는 금지)	죄동
규약	<u>가능</u> (단, 확정된 수익 요구하는 투자는 금지)	<u>금지</u>

5. 표준계약서 사용

- 프로젝트 투자시, 문화체육관광부(관련 공공기관 포함)가 수립한 표준계약서(방송영상(방송영상 제작, 방송출연, 방송영상제작스태프, 방송작가집필), 영화(근로, 시나리오, 투자), 공연예술 등)적용
 - 해당 조항이 규약에 반영된 펀드 : 의무 적용
 - 해당 조항이 규약에 반영되지 않은 펀드 : 권고사항
- ※ 해당 투자조합이 투자하기 전에 위의 '표준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표준계약'으로 수정 혹은 변경이 불가할 경우, 투자 제외

6. 영화 인센티브 관련 투자기준

- 영화제작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부담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수익배분 과정에서 감독과 배우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까지 과도하게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재무적 투자자의 공정한 영화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감독 및 배우 인센티브 관련 투자 기준 마련
- 감독 또는 감독의 특수관계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이 제작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감독의 인센티브는 제작사 수익 분배로 같음하고,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 금지
- 감독 및 배우의 인센티브가 인센티브 본래 목적과 맞지 않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영화에 투자 자제를 권고함

7. 프로젝트 제작 관련 투자기준

- 타 제작사 또는 타인 명의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모태 자펀드 투자 금지

IV. 프로젝트 투자 사후관리

1. 투자심의자료

① 투자심사보고서의 작성

- 프로젝트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시에는 제작사, 투자금이 입금 되는 투자기업(SPC등), 프로젝트에 대한 아래 '주요 투자조건 요약'을 심사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함

<주요 투자조건 요약 (예시, 프로젝트 투자)>

투자개요 (총괄)	제작사	
	투자금 입금 회사	
	프로젝트명	
	실제자금관리자	
	배급사	
	총 투자금액	1,000,000,000원
	투자지분	투자지분율 : 00%
	투자조건	수익배분 비율 등
	투자금 사용용도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 관련 이자율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시 제재 방안	
제작사 개요	설립일	
	대표이사	
	재무사항	
	주요연혁	
투자기업 (SPC) 개요	설립일	
	대표이사	
	재무사항	
	주요연혁	

	자금관리자	
	사업관리자	
프로젝트개요	총제작비	
	총제작비 구성 내역	
	배급사	
	실제자금관리자	
	개봉예정일	

② 준법감시보고서의 작성

- 준법감시보고서는 투자금 입금 기업을 명시하되 제작사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2 . 투자시 VICS 입력항목

① 투심위 등록시 자료 입력

- 제작사에 직접 투자 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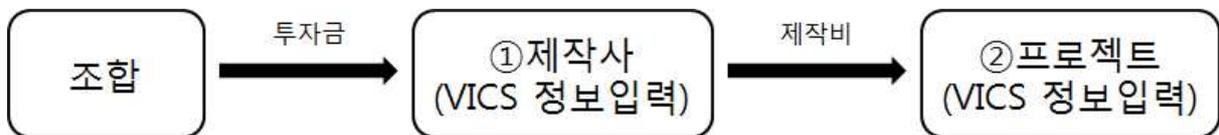
	구분	주요 체크 내용
제작사	담당심사역	
	투심일자	반드시 5영업일 전 보고
	투심시간	
	투심장소	
	투자업체 (=제작사)	
	대표이사	
	자본금	
	설립일자	
	사업자번호	
	업종	
	투자금액	
	프로젝트명	
	인정/주목적/특수목적 여부	각각 해당 사항 체크
	투심보고서	파일로 첨부
	준법감시보고서	파일로 첨부(날인 필요)

- SPC(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을 통하여 투자 하는 경우
(제작사와 투자금을 입금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

	구분	주요 체크 내용
공통	담당심사역	
	투심일자	반드시 5영업일 전 보고
	투심시간	
	투심장소	
SPC	투자 업체명(=SPC 등)	
	대표이사	
	자본금	
	설립일자	
	사업자번호	
제작사	실제 제작사 업종	
	실제 제작사명	
	대표이사	
	자본금	
	설립일자	
	사업자번호	
	투자금액	
	프로젝트명	
	인정/주목적/특수목적 여부	각각 해당 사항 체크
	투심보고서	파일로 첨부
	준법감시보고서	파일로 첨부(날인 필요)

② VICS 월 보고(매월 7일까지)시 입력 사항

- 제작사에 직접 투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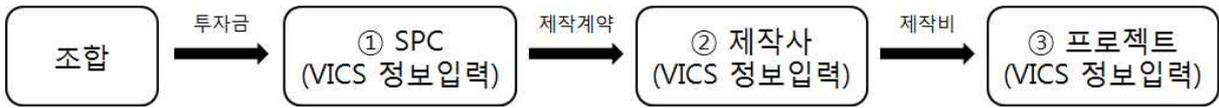


분류	구분	주요 체크 내용
① 제작사 (기업)	설립일	
	대표자	

분류	구분	주요 체크 내용
	주요제품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결산월	
	종업원수	
	상장여부	
	상장일자	
	홈페이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주주명부	
②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유형구분	영화/공연/게임 등
	제작사명	
	배급유통사명	
	감독명	
	주연배우명	
	제작시작일자	
	제작종료일자	
	개봉일자	
	상영종료일자	
	총전국관객수	상영 종료 후 반드시 수정하여 기입
	손익관객수	
	시놉시스개요	
	본건투자금액	
	원화순제작비	
	총제작비	
	마케팅비	
심사역	발굴자, 사후자 등 구분하여 입력	

※ 투자된 프로젝트의 분야(영화, 게임, 방송드라마, 공연 등)에 따라 일부 입력 내용은 다름

- SPC를 통하여 투자시에는 SPC정보와 제작사 정보를 모두 입력



분류	구분	주요 체크 내용
① SPC	사업관리자	
	자금관리자	
	제작사	실제 제작사명을 기입
	대표이사	
	자본금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 제작사 (기업)	기본정보	위 표와 동일
③ 프로젝트	기본정보	위 표와 동일

③ 프로젝트 투자시 산업별 분류

- 벤처캐피탈협회 프로젝트 유형 분류 준용(VICS 월보고 등록 메뉴 확인)

3. 별도계좌 개설 · 운영

① 별도계좌 개설에 대한 규정

-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실제 자금을 관리하는 자'가 모두 별도 계좌 개설 필요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의2 ②항)
-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제작사이며 실제 자금을 관리하는 자에 대한 판단은 펀드 투자금의 흐름을 통해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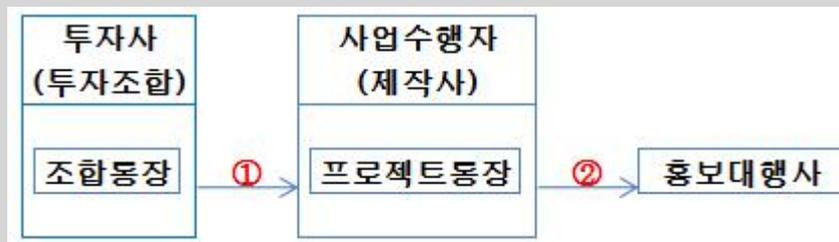
② 별도계좌 개설 및 운영 방법

(예시1) 조합에서 제작사에 입금한 자금이 즉시 메인투자사에 입금되는 경우 제작사는 사업수행자, 메인투자사는 실제 자금관리자에 해당됨 이 경우 별도의 프로젝트 통장을 개설하여 자금 관리를 해야함.



다만, 메인투자사에서 제작비로 선집행한 제작비를 상환하는데 제작비를 사용하는 경우 메인투자사 프로젝트 통장에서 메인투자사 본계정 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이 가능(②->③)

(예시2) 조합에서 제작사에 입금한 자금이 제작사에서 바로 사용되는 경우 제작사는 사업수행자이면서 실제 자금관리자에 해당됨



- (계약체결) 조합은 투자계약 체결시 사업수행자와 실제 자금관리자의 별도계좌 개설의무를 계약서에 명기해야 함
- (시점) 사업수행자와 실제 자금관리자는 조합 투자를 받는 시점부터 프로젝트 종료 시점까지 별도계좌를 개설 운영하여야 함
- (대상) 프로젝트 전체 제작비와 매출은 모두 별도계좌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별도계좌를 통해 제작비와 매출 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함

4. 감사보고서 작성

- (시점) 프로젝트가 제작 완료되어 상용화(영화 : 개봉, 드라마 : 방영 등)된 후, 보고서 작성 완료 후 VICS에 등록
- (형태) 1. 회계법인이 발행한 보고서
2.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사용 내역 및 투자금의 적정사용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확인서(증빙자료 첨부)로 대체 가능
- (내용) 보고서 작성 시점으로 제작비용 사용 내역 및 매출 발생 내역, 투자자 구성 및 배분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보고서 작성 비용)제작비에 포함시킴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조합비용으로 집행 가능

5.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 (대상) 제작완료 이전 단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6장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야 함
- (예외) 문화계정 제도 개선에 따라('15.10.29) 운용사 책임하에 문전사 의무등록 예외 조항 적용 가능(단, 규약 변경 완료된 조합에 한함)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의무 예외 조항>

제작완료 이전 단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6장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 업무집행조합원이 보전하는 손실의 원인이 문화산업전문회사 미설립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디지털콘텐츠 분야)

I.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적

-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디지털콘텐츠 분야)은 업무집행조합원이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를 정보통신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결성 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제공하는데 있음

2. 적용범위

-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디지털콘텐츠 분야)은 한국모태펀드의 미래계정 출자 자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그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법 및 그 밖의 한국벤처투자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짐
- 본 내용은 한국벤처투자의 권고사항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는 아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 관리를 위한 세부 적용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임. 가급적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조하여 업무 처리할 것을 권고함
-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은 향후에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며, 만약 본 가이드라인이 업무집행조합원 자체 업무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한국벤처투자 담당 심사역과 협의를 통해 본 가이드라인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음
- 본 가이드라인에 사례로 제시되는 부분은 당사에서 임의로 재편집한 내용으로 참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업무에 인용할 때는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자펀드 운영 가이드라인은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공통사항)을 참고하기 바람

※ 프로젝트 투자

- 프로젝트 투자는 본 가이드라인의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문화콘텐츠 분야)”의 관련 내용을 준용. 다만, 한국벤처투자 해석에 따라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II. 디지털콘텐츠 자펀드 운용

1. 투자 대상

① 투자 가능 분야

구분	미래계정
투자가능 분야	<p><u>디지털콘텐츠 산업이외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SW 등 정보통신산업에 한하여 투자 가능</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콘텐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CG, 4D, 가상현실, 홀로그램, 스마트콘텐츠 등 ICT기술과 융합하여 나타나는 콘텐츠를 말하며, 차세대 방송(ICT+방송), 엔터테인먼트(ICT+게임), 정보콘텐츠(ICT+Life), E-Learning, SNS 콘텐츠(ICT+정보공유) 등 - 영화·드라마 프로젝트: 순제작비의 15%이상이 CG 제작비에 사용되거나 CG기업이 지분 참여하는 경우만 투자가능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디지털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6. 생략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수

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서비스 및 산업

2. 생략

② 분야별 세부 투자 대상(기준 제시가 필요한 분야만 포함)

디지털 콘텐츠 해외진출	<p><u>디지털콘텐츠해 해외진출¹⁾ 중소·벤처기업 및 디지털콘텐츠 글로벌 프로젝트²⁾</u></p> <p>1) 해외진출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인을 설립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 수출비중을 높이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 외자유치 또는 해외 M&A를 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 디지털콘텐츠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 <p>2) 디지털콘텐츠 글로벌 프로젝트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이 제작에 참여하는 해외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 - 해외판매가 순제작비의 10% 이상 약정되었거나 실제 판매된 국내 프로젝트 - 순제작비의 10%이상 해외자본을 유치한 국내 프로젝트 <p>(* 투자의무비율과 인정여부는 개별규약 참고)</p>
디지털 콘텐츠 창업초기	<p><u>디지털콘텐츠 창업초기기업¹⁾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초기²⁾ 프로젝트</u></p> <p>1) 창업초기 :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 또는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의 기업</p> <p>2) 제작초기 : 문화계정의 기획개발(제작초기) 정의 준용(p.42)</p> <p>(* 투자의무비율과 인정여부는 개별규약 참고)</p>

III. 프로젝트 투자

1. 프로젝트 투자의 정의

- 본 가이드라인의 Part2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문화콘텐츠 분야)”의 ‘1. 프로젝트 투자의 정의’(p.51) 참조

2. 해외 프로젝트 투자

- 본 가이드라인의 Part2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문화콘텐츠 분야)”의 ‘2. 해외 프로젝트 투자’(p.52) 참조

3. 투자의무비율 산정 기준

- ① SPC설립 등으로 인해 자펀드의 투자금이 입금되는 투자기업과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제작사가 상이한 경우
- 본 가이드라인의 Part2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문화콘텐츠 분야)”의 ‘3. 투자 의무 비율 산정 기준’(p.53) 참조

4. 표준계약서 사용

- 디지털콘텐츠 기업 투자시 해당 기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표준계약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함

IV. 프로젝트 투자 사후관리

1. 프로젝트 투자 사후관리

- 본 가이드라인의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문화콘텐츠 분야)”의 관련 내용을 준용. 다만, 한국벤처투자 해석에 따라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 후 관 리 가 이 드 라 인
(FAQ)

* FAQ 최신버전은 VICS 공지사항에서 확인

순번	질 문	답 변
1	계약당사자가 문화산업전문회사인데 준법감시보고서 작성시 창업자/벤처기업/중소기업 기준은?	해당 프로젝트의 실제 제작사를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규약상 투자유무비율 달성여부 판별기준일자는투심위승인기준인지? 아니면자금집행일기준인지?	조합에서 투자유무비율 달성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일자는 자금집행일 기준입니다.(규약상 별도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 제외) 투심위 승인일자는 효력이 없으므로 투자기간내 투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창업투자조합의 코넥스 기업 또는 제작 프로젝트 투자가 창업지원법상 인정투자에 해당하는지?	인정투자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참고)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으로) 인정투자로 인정되는 프로젝트 투자 분야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의2(프로젝트투자)에 열거된 분야에 한합니다.
5	투자기간이 경과한 A조합의 기투자업체에 대해 B조합에서 투자시 A, B 조합 모두 후행투자에 따른 조합원총회가 필요한지?	투자단가의 적정성 문제, 투자금 회수시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조합원총회 개최대상이 맞습니다.
6	금년 5월에 결성되었으며 투자건이 없는 상태인데 6월말 기준반기보고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또한 투자보고회를 개최해야하는지?	보고시점에 조합이 결성된 상태이므로, 투자건 유무와 무관하게 영업보고서 작성 및 투자보고회 개최 대상입니다. 투자실적이 없다면 투자보고회 시 향후 운용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7	청산중인 조합도 영업보고서 작성 및 투자보고회를 개최 해야 하는지?	청산중인 조합도 잔여 포트폴리오 현황파악이 필요하므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VICS를 통해 전자보고 하시면 됩니다.(투자보고회는 미개최)

순번	질문	답변
8	규약이 부분적으로 변경될 경우 개정규약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날인받아야 하는지요?	규약 개정은 조합원총회를 거쳐 진행되며, 총회 의사록으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내역이 확인 가능하기에 당사에서는 개정규약 날인을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 관리목적으로 개정본 파일을 KVIC 자펀드 사후관리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9	일반펀드매니저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요?	조합원총회 부의대상은 아니나 사전에 당사 자펀드 담당심사역에게 알려주시고, 수시보고를 통해 변경내용(변경사유, 변경시점, 대체인력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조합 핵심운용인력이 변경될 예정이기에 조합원총회 개최 예정인데, 규약개정의 건으로 별도 안건 부의가 필요한지?	대표펀드매니저 등 핵심운용인력에 관한 사항은 규약본문에 명시되는 사항이므로 규약개정필요사항입니다. 조합원총회 개최시 별도안건으로 부의바랍니다.
11	출자증서 원본 제출처는?	조합 규약에 의거, 아래 해당하는 모펀드의 수탁은행에 우편으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변경시 업데이트 예정) 1.모태펀드: (04538) 서울시 중구 을지로35(을지로1가) 5층 KEB하나은행 수탁영업부 (남예진 차장) 2.일자리창출펀드1,2호: (150-973)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14 한국산업은행 신탁부 (신은아 대리) 3.산업기술사업화모펀드: (100-151) 서울시 중구 통일로120 NH농협은행 신관 13층 수탁업무부 (박정원 주임)
12	조합에서 배분을 하려는데 모펀드 배분금 입금계좌는?	배분금 입금계좌는 모펀드(모태펀드, 일자리창출펀드 등)와 출자계정(중진·특허·문화 등)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KVIC 자펀드 사후관리담당자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순번	질문	답변
13	잔여자산 평가 시 상장주식도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해야 하는지?	상장된 유가증권일 경우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조합청산일까지 처분되지 않은 자산이 남아있을 때, 규약의 의거 분배일 30거래일 전부터 분배 직전일까지의 증가평균을 기준으로 평가)
14	2012년 이전에 결성된 조합인데 VC구주유통망을 필수적으로 이용하여 매각하여야 하는지요?	VC구주유통망은 '12년2차 기준규약 개정시 도입된 제도로 기준규약 개정 이후 결성된 조합의 경우 규약에 반영하여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규약에 VC구주유통망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은 조합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구주거래의 공정성 제고 및 효율적 매각을 위해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15	잔여자산 평가법인으로 기존 조합 회계감사인 선임 가능여부?	기존 조합회계감사인은 해당조합 잔여자산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16	회계감사인 선임 시 제안서 접수 등 자체 입찰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요?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한 입찰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후관리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최대 회계감사보수 범위내에서 조합 및 업무집행조합원과 이해상충관계가 없는 회계법인으로 선정하시면 됩니다.
17	해산감사 또는 청산감사 목적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기존조합 감사인도 선임가능한지?	기존 조합감사인도 현재 이해상충 이슈가 없다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18	피투자기업 투자금실사는 조합 회계감사인만 진행할 수 있는 지?	규약상 조합원총회를 통해 선정한 회계법인이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회계법인의 일정이나 동반 투자후 비용절감 등의 문제로 진행이 어렵다면 본 자료 7페이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으로 투자금실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9	조합 만기 후 해산총회 이전에 자산 처분이 가능한가요?	조합 만기일 이후 해산총회시까지(청산인 선임시까지)는 자산처분 등 일체의 행위가 불가합니다.

순번	질문	답변
20	CB, BW 등 만기연장 또는 이자율 감경 등 회수조건 변경을 위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요?	회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GP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변경된 사항은 수시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1	조합의 투자기간 종료 후 투자기간 중 투자한 BW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요?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투자시 신주인수권 행사를 가정하고 투자이사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2	기 투자 BW의 신주인수권 행사 시 투심위를 개최하여야 하나요?	신주인수권 행사 시 추가적 투자금 납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투심위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23	조합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설립과 동시에 투자) 가능한가요?	조합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4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서 교환사채(EB)를 투자할 수 있나요?	교환사채(EB)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단, 해외투자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서 투자형식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5항 등 참조)
25	창업초기·청년창업 투자조합에서 기투자한 특수목적 해당기업을 후속투자 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기준으로 특수목적에 해당하지 않아도 인정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조합규약에 근거 조항이 없는 경우 규약 개정이 필요하며,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26	청년창업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만 39세 이하 대표이사가 한 명만 존재해도 청년창업 특수목적투자자로 인정 가능한가요?	청년창업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이사 전원이 만 39세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단, 투자일기준으로 공동 대표이사 전원이 1년 이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